2018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 리 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2018.1.1.부터 시행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등 다른 소득과 차별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종교인소득 신고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기본 개념, 과세대상 소득,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방법과 절차,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대해 작성 사례와 문답(Q&A)을 함께 실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 책자가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실무가이드로서의 역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 시행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등 납세지원 체계 구축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 1.

법인납세국장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하여야 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 납부 가능

<table>
<tr><th></th><th>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th><th>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th></tr>
<tr><td>과세소득</td><td>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td><td>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td></tr>
<tr><td>비과세소득</td><td>학자금, 식사 · 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td><td>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td></tr>
<tr><td>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td><td>
<table>
<tr><th>종교인이
받은금액</th><th>필요경비</th></tr>
<tr><td>2천만원 이하</td><td>80%</td></tr>
<tr><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td>1,600만원+
2천만원 초과의 50%</td></tr>
<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2,600만원+
4천만원 초과의 30%</td></tr>
<tr><td>6천만원 초과</td><td>3,200만원+
6천만원 초과의 20%</td></tr>
</table>
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
</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근로소득공제금액</th></tr>
<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70%</td></tr>
<tr><td>500만원 초과
1,500백만원 이하</td><td>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td></tr>
<tr><td>1,500백만원 초과
4,500백만원 이하</td><td>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td></tr>
<tr><td>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td></tr>
<tr><td>1억원 초과</td><td>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td></tr>
</table>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
</td></tr>
<tr><td>소득공제</td><td>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 개인연금저축</td><td>(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td></tr>
<tr><td>세액공제</td><td>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td><td>(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td></tr>
<tr><td>근로 · 자녀장려금</td><td>수급 가능</td><td>수급 가능</td></tr>
</table>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	기본(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人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 · 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2%)				
산출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15%,25%,30%)	○	○
	표준세액공제(특별소득 · 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종교인소득 관련 법령 규정

구분	내용	법령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 과세**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소법§21①26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 허용**	소법§21③
	종교단체의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 재단(그 소속 단체를 포함)	소령§41⑭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소법§12 5호 아목
	비과세 대상의 세부기준 –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종교활동비 등), 자녀보육 수당, 사택제공비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의 **기타소득 필요경비계산** – 2천만이하 80%, 지급액 증가에 따라 비율 감소(~20%)	소령§87 3호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 예외 –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소법§73①,②
	종교단체의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령§186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소령§202④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 소득 지급 시(미지급시 2월말)	소법§145의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 · 세액공제하여 소득세 산출	소령§202의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예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법§155의6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소법§164
기타	종교단체의 **구분기장에 대한 규정**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비과세 금품도 포함)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	소령§41⑮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 · 조사의 범위** – 종교단체가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 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 회계에 대하여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소법§170 소령§222
서식 (7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호),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23호서식(6)),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25호의3), 종교인소득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등	소칙(별지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칙)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신청기간	소득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18.6.1.~6.30.	'18년 7월~12월	'19년 1월 10일
'18.12.1.~12.31.	'19년 1월~6월	'19년 7월 10일

◆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

2018년 1월부터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이행합니다.

반기별 납부 종교단체	기간	월별 납부 종교단체
종교인소득 제도 시행	'18년 1월	종교인소득 제도 시행
해당사항 없음	2월10일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3월10일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4월10일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5월10일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6월10일	5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월~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7월10일	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해당사항 없음	8월10일	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9월10일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0월10일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1월10일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2월10일	1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8년 7월~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9년 1월 10일	'18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 월별 납부하던 종교단체는 '18.6.1.~6.30.까지 반기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시 7월~12월 소득지급분에 대하여 다음 해(2019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18.12.1.~12.31.까지 반기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시 다음 해 1월~6월 소득지급분에 대하여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제출(2018년 12월)

○ 2018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18.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18.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종교단체	기간	월별 납부 종교단체
2018년 지급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9년 2월	2018년 지급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19.1월~2월 지급분과 '18년 연말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 환급신청가능※	'19년 3월 10일	2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18년 연말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 · 납부(또는 환급신청)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 종교단체는 월별 납부자와 동일하게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환급)은 '19.7.10.까지 이행하면 됩니다. (1월~6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합산)

2019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교인)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2018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목 차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5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 6
* 종교인소득 관련 법령 규정 ····· 7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 8
*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 ····· 9
*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제출(2018년 12월) ····· 10

제1장 세무용어의 이해와 기본 개념

제1절 세금의 개념과 종류 ····· 18
1. 세금의 개념 ····· 18
2.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 18

제2절 소득세 개요 ····· 19
1. 소득세 구분 ····· 19
2. 소득세 납세의무자 ····· 20
3. 소득세의 계산 방법 ····· 20
4. 소득세 신고 · 납부 ····· 20

제3절 원천징수 ····· 21
1. 원천징수 개념 ····· 21
2. 원천징수 관련 시기 ····· 21
3. 원천징수 세율 ····· 21
4.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 22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 22

제4절 세법상 인격과 고유번호 ····· 23
1. 세법상 인격 ····· 23
2. 고유번호 ····· 24

제2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이해

제1절 종교인소득 ····· 30
1. 개념 ····· 30
2. 분류 ····· 30
3. 사례(Q&A) ····· 32

제2절 종교관련종사자 ····· 35
1. 개념 ····· 35
2. 구분 ····· 35

제3절 종교단체 ····· 37
1.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37
2.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37
3.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38

제4절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 38

제5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 39

제6절 종교단체 회계 ····· 40
1. 종교단체의 구분 ····· 40
2. 장부의 기록 및 비치 ····· 40
3.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보관 ····· 42
4.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 등 ····· 48
5.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 51
6.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 관리 ····· 52
7.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 · 조사의 범위 ····· 58

제7절 종교인소득 관련 외국 사례 ····· 59
1. 미국 ····· 59
2. 영국 ····· 62
3. 독일 ····· 63
4. 일본 ····· 63
5. 프랑스 ····· 64
6. 호주 ····· 65
7. 캐나다 ····· 66

제3장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제1절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68
1. 원천징수 시기 ····· 68
2.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 68
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68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71
5. 원천징수세액 납부 ····· 71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 71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 72
8. 원천징수세액 신고 · 납부 절차 ····· 73

제2절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87
1. 연말정산이란 ····· 87
2. 연말정산 시기 ····· 87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 88
4.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 90
5.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96
6.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 97
7.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서식 ····· 97

제3절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98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 98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 98
3.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 99
4.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 101
5.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101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07

제4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 108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 108
2. 퇴직소득 수입시기 ····· 108
3. 퇴직소득금액 ····· 108
4. 퇴직소득공제 ····· 109
5. 퇴직소득 과세표준 ····· 110
6. 퇴직소득 세율 ····· 110
7. 퇴직소득 산출세액 ····· 110
8.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 111
9. 퇴직소득세 납부 ····· 111
1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11
1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11
12.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112

제4장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1절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14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 114
2. 신고 기간 ····· 114
3. 납세지 ····· 114
4. 신고서 작성 ····· 115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116
6. 종합소득세 세율 ····· 123

7. 신고서 제출방법 ····· 124
8.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125

제2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125

제3절 무신고 · 과소신고시 불이익 등 ····· 126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 · 과소신고시 불이익 ····· 126
2.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 신고 ····· 126

제5장 근로 · 자녀장려금

1. 종교인소득과 근로 · 자녀장려금 ····· 128
2. 근로장려세제(EITC) ····· 128
3. 자녀장려세제(CTC) ····· 129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130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 · 감액 ····· 132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132

참고1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참고 법령 ····· 133
1. 종교단체 관련 법령 ····· 133
2.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관련 법령 ····· 134
3.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법령 ····· 137

참고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 144

참고3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서식 ····· 149

참고4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제4항 관련) ····· 179

제 1 장

세무용어의 이해와 기본 개념

제1절 세금의 개념과 종류

1 세금의 개념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는 풍요로운 문명사회를 누리는 대가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2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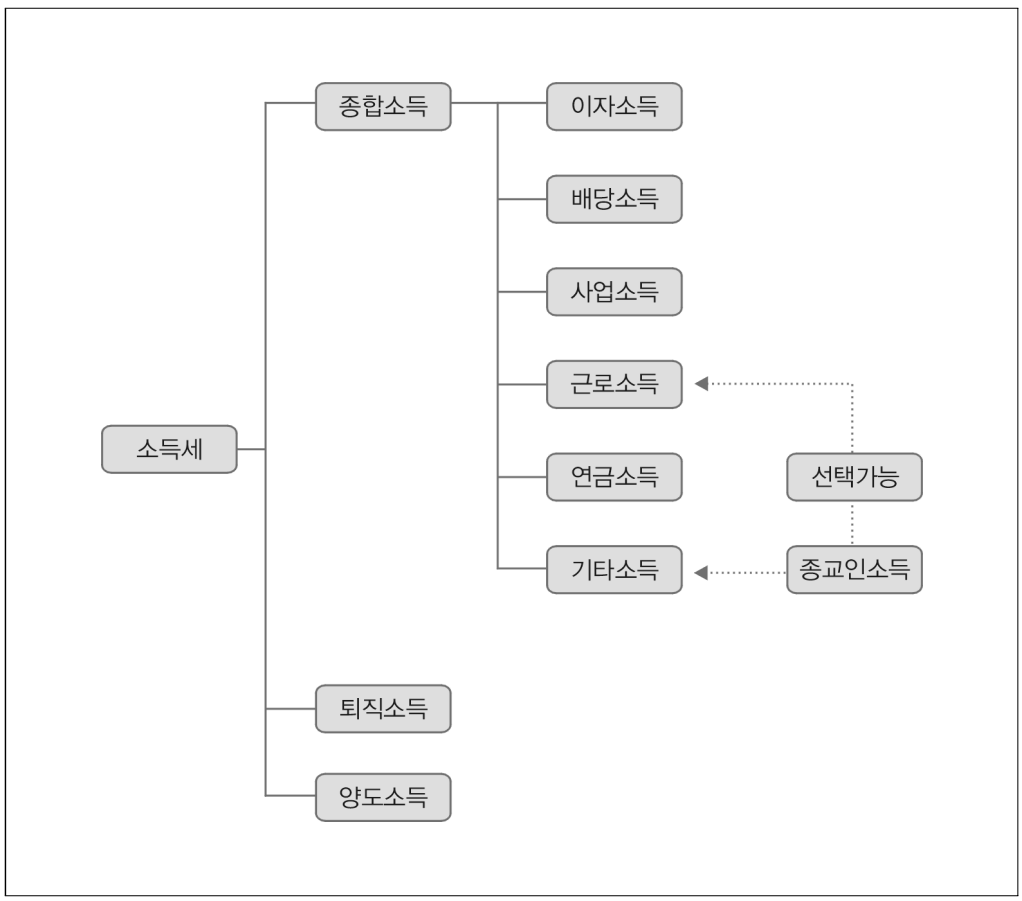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세 목(25개)</th><th>세 법(14개)</th></tr>
<tr><td rowspan="19">국세
(14개)</td><td rowspan="18">내국세</td><td rowspan="13">보통세</td><td rowspan="4">직접세</td><td>법인세</td><td>법인세법</td></tr>
<tr><td>소득세</td><td>소득세법</td></tr>
<tr><td>상속세</td><td rowspan="2">상속세 및 증여세법</td></tr>
<tr><td>증여세</td></tr>
<tr><td rowspan="5">간접세
(거래세)</td><td>종합부동산세</td><td>종합부동산세법</td></tr>
<tr><td>부가가치세</td><td>부가가치세법</td></tr>
<tr><td>개별소비세</td><td>개별소비세법</td></tr>
<tr><td>주세</td><td>주세법</td></tr>
<tr><td>증권거래세</td><td>증권거래세법</td></tr>
<tr><td>인지세</td><td>인지세법</td></tr>
<tr><td rowspan="4">목적세</td><td rowspan="4">–</td><td>교통 · 에너지 · 환경세</td><td>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td></tr>
<tr><td>교육세</td><td>교육세법</td></tr>
<tr><td>농어촌특별세</td><td>농어촌특별세법</td></tr>
<tr><td>관세</td><td colspan="2">–</td><td>관세</td><td>관세법</td></tr>
<tr><td rowspan="12">지방세
(11개)</td><td colspan="3" rowspan="10">보통세</td><td>취득세</td><td rowspan="12">지방세법</td></tr>
<tr><td>등록면허세</td></tr>
<tr><td>재산세</td></tr>
<tr><td>자동차세</td></tr>
<tr><td>주민세</td></tr>
<tr><td>지방소득세</td></tr>
<tr><td>지방소비세</td></tr>
<tr><td>담배소비세</td></tr>
<tr><td>레저세</td></tr>
<tr><td colspan="3" rowspan="2">목적세</td><td>지역자원시설세</td></tr>
<tr><td>지방교육세</td></tr>
</table>

제2절 소득세 개요

1 소득세 구분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소득세의 계산 방법

과세대상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① 소득세 과세대상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②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③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세액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제14호)

4 소득세 신고 ·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소득을 지급받는 종교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원천징수 관련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합니다.

3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따라 다르며,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직원 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2018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

①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2018년 1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②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③ 원천징수세액 월별 신고·납부 종교단체는 2018년 1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2018년 2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제출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④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⑥ 종교단체는 종교인이나 근무 직원 등에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하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환급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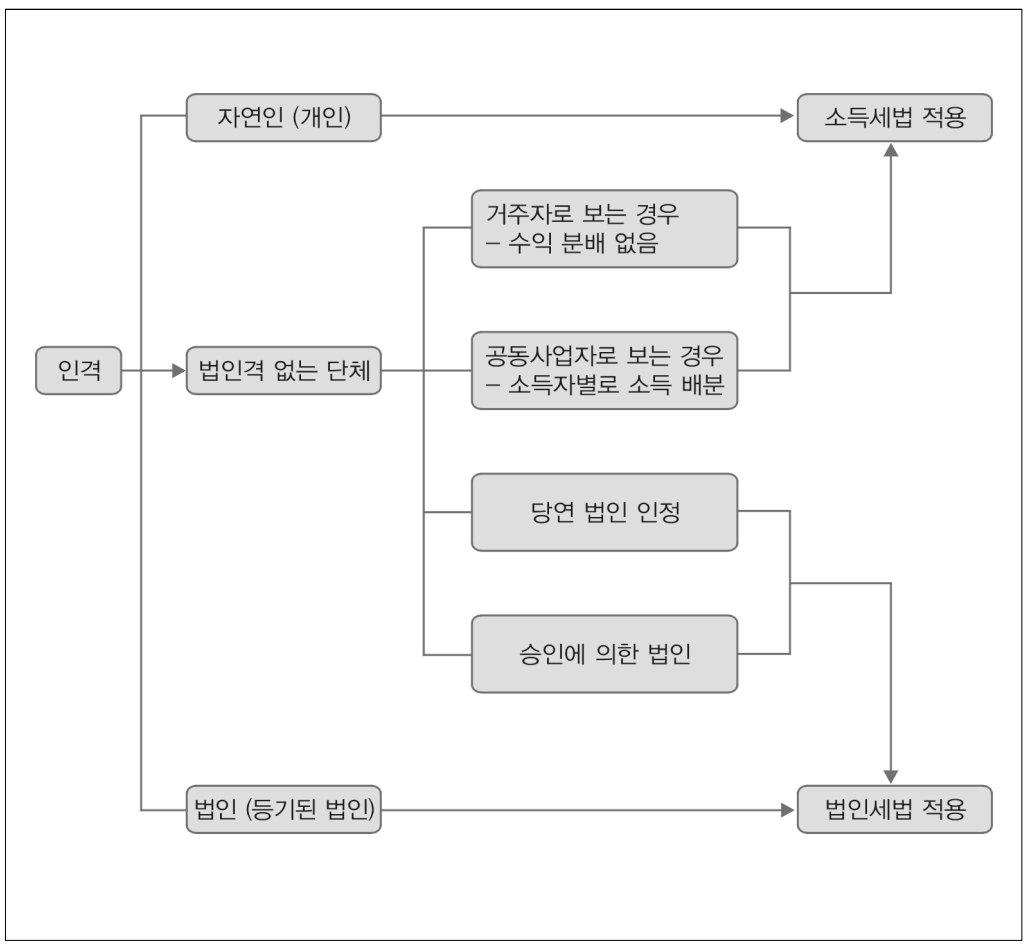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4절 세법상 인격과 고유번호

1 세법상 인격

가. 세법상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할 납세자와 법인세법을 적용할 납세자로 구분합니다.

나. 자연인은 개인으로 소득세법을 적용, 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은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거주자(수익분배 없음)로 보아 단체 자체를 독립거주자로 보는 경우

2) 공동사업자(수익분배 있음)로 보아 소득이 배분되는 소득자별로 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은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절차 》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
③ 고유번호 부여

※ 승인을 받아 법인이 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참고1)2.

2 고유번호

가. 고유번호란 납세의무자의 이동 · 변동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 ·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나. 고유번호의 부여

1)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⑤)

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 고유번호로 구분되는 종교단체 》
법인단체 : xxx-82-xxxxx (법인세법 적용)
개인단체 : xxx-89-xxxxx (소득세법 적용)

다. 고유번호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 단체는 소속 확인서)

4) 대표자 증명서류(대표자 선임 근거서류)

5) 토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6) 단체 직인

7) 접수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라. 용도 및 목적

1) 금융기관에 종교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서류

2) 기부금 영수증 발행

마.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임대 등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종교단체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 고유번호증(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2. 사업장 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	㎡				. . . ~ . . .	원	원	
허 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 당 여 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이해

제1절 종교인소득

1 개념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2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 · 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합니다.

Tip :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교육비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 경우 학교에는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말합니다.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

① 일직료 · 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③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④ 종교인이 천재 · 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사례(Q&A)

1. 종교인의 모든 소득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3. 신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인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인은 지급받은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자는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교단체가 종교인 및 그 가족의 생활 편의를 위해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복리후생비가 학자금*, 식사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 범위 :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 수업료 · 수강료 등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며,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종교인이 방송에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방송국 등에서 지급받은 강연료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강연료가 인적용역 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6.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는 무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종교 활동과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7. 종교단체의 대표자(주지스님, 담임목사 등)인 경우 다른 종교인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 종교인소득에 따른 세금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교단체의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사례금, 강연료 등)으로 과세됩니다.

9. 종교인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 자녀교육비, 의료비, 상여금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제2절 종교관련종사자

1 개념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릅니다.

2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업 무
종교관련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성직자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참고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관련종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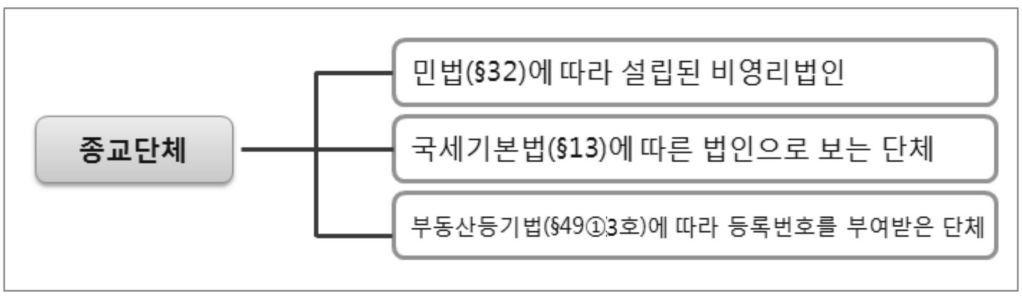
분류명			설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종교 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24811)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제, 주교, 신부, 부제)
		승려(24813)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 스님, 법사)
		교무(24814)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무, 원불교)
		그 외 성직자 (248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 (전교, 대종교, 유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수녀 및 수사 (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 · 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녀, 수사)
		전도사 (24892)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 (포교사, 선교사)

출처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제3절 종교단체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 범위】



1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

2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합니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정

② 소속증명서

③ 대표자 증명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3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시 · 군 · 구청 지적과에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를 의미합니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

제4절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중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종교단체가 은퇴한 종교인에게 생활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종교인소득 지급액은 종교인이 해당 과세기간(예: '18년 1월 ~ 12월)에 받은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소요된 필요경비가 아래의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

종교인이 받는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20%

(계산 예시)

①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6백만원(=2천만원*80%)입니다

②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3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21백만원(=16백만원+(3천만원-2천만원)*50%)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지출증빙 필요)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제6절 종교단체 회계

1 종교단체의 구분

가.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종교단체는 세법상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할 납세자와 법인세법을 적용할 납세자(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로 구분합니다.

> 《 고유번호로 보는 종교단체 구분 》
>
> 개인단체 : xxx-89-xxxxx (소득세법 적용)
> 법인단체 : xxx-82-xxxxx (법인세법 적용)

나.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종교활동)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임대 등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종교단체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 고유번호증 신청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청

2 장부의 기록 및 비치

가. 세무상 원칙

고유목적 사업만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종교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헌금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므로 세법에 따른 기장의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예외

1) 설립 당시 법령 및 정관상 필요한 장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고 세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 등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

가)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나)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 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 ·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①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②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보관

〈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가.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낸 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기부자와 기부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1) 작성

기부를 받은 종교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나) 기부금액

다) 기부금 기부일자

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2) 보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종교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요청에 의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1) 종교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종교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기부금과 관련하여 ①기부금 영수증 ②기부자별 발급명세서 ③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 연도	. . . ~ . .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기부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부 명 세			발급명세	
		주 소 (본점 소재지)		내 용	코드	금 액	발급 번호	발급일

작성방법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귀속연도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명세

① 일련번호	② 기부일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명세	
		⑤ 주소 (사업장)		⑥ 내용	⑦ 코드	⑧ 금액	⑨ 발급번호	⑩ 발급일자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4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 등

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1)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비용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 종교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에 매월 기록합니다.

◆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기록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명,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2. 소득자인 종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종교인의 가족사항인 배우자(유 · 무), 부양가족(20세 이하, 60세 이상), 신고서제출일, 70세 이상 인원수, 장애인 인원수, 부녀자공제 여부, 한부모 공제 여부
4. 월별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으로 지급일, 지급액(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종교활동비
5.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결과인 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종합소득공제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자녀 · 연금계좌 · 기부금 · 표준), 외국납부세액, 결정세액, 원천징수한 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차감환급세액

3)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 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월별 지급금액 합계에 대해 원천징수 세액을 급여수준 및 부양가족수별로 정해놓은 표입니다.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작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매월 또는 반기별(반기별납부 신청 · 승인 단체에 한함)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종교단체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매달 또는 반기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제출

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반기별납부 특례 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만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1월~6월	7월 10일
7월~12월	다음 해 1월 10일

라. 원천징수영수증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종교단체는 소득을 지급한 종교인 등에게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종교인 등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 지급명세서

1) 정의

지급명세서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2) 제출의무 및 시기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제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비과세소득 포함)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0.5/100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4)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활용

원천징수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책정,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 여러 분야에 이용합니다.

이를 제출 누락하거나 착오 제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정확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가. 개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고용관계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 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선택인 종교인소득과는 달리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의무이므로, 종교단체는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종교단체는 지출한 종교활동비용 중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자별로 그 지급내역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매월 기록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종교단체는 종사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시 월별 지급금액 합계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종교단체는 종사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1월~6월	7월 10일
7월~12월	다음 해 1월 10일

5)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록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종교인이 아닌 자가 종교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이 아닌 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근로소득)인지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기타소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 관리

구분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한 장부 · 서류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가.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종교단체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나.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3)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 관리

1) 기록방법

가)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는 종교인소득 등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종교인소득)

②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근로소득 등)

③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유지비용 등)

종교단체의 지출(소요 비용)		소득 귀속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	→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으로 귀속
–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종교인소득으로 귀속되나 비과세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	종사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귀속
③ 종교시설 유지 또는 증축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보수비 등)	→	과세 대상 아님

나)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교 활동 비용에 대해 귀속자별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중 종교인소득, 종사직원 근로소득,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행사비용 등과 같이 종교의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구분하여 기록

②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

③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 종교인 소득을 관리

2)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

가)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만을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기록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사용범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사용여부, 지출처, 사용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종교인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나)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별로 세부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각 종교계별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라)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계정에 대하여 과세 · 비과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종교인회계를 별도 기록하는 방법

가) 종교단체 회계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지출에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나) 종교인회계는 종교단체의 지출 중 종교인을 통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으로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 데 편리합니다.

4)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 방법

가)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종교 활동 비용은 사용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나)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각 종교계별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 종교단체는 종교인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 · 비과세 · 과세제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질문)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단체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제도로 종교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관리 사례
①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는 구분됩니다.
②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내부 결정기관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한도로 합니다.
③ 지출은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종교활동 비용을 지출한 종교인은 매월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사용 내역서에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⑤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개인용도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교단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⑥ 종교인이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종교활동 비용을 사용한 경우 카드 전표에 사용 목적과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⑦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지출의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지출 일시 및 내역을 기재한 내부영수증을 작성한 후 종교단체에 제출하고 종교단체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과의 관계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교단체의 구분 기록 · 관리		비고
		수입	비용	
고유 목적 사업	과세 대상 아님	○ 기부금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 종교활동비용 ○ 종교시설 유지비용 ○ 종교시설 증축비용 ○ 종교시설 관련 공과금 및 재산세 등	☞ 과세 제외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원천징수 선택 가능)
		○ 기타수입	○ 직원보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수익 사업	과세 대상	○ 매출액	○ 매출(서비스)원가 ○ 인건비 ○ 부대비용	☞ 종교단체에 대해 과세

7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 · 조사의 범위

가.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 · 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1)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나.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 · 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

3)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 ·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7절 종교인소득 관련 외국 사례[1)]

1 미국

가.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체계에 따라 신고함

1) 목회자가 종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목회활동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고용직원으로 보아 개인소득 신고서상 근로소득으로 분류함[2)]

2) 목회활동 외 결혼 주례, 세례, 장례 등 인도로 사례금 소득은 개인소득 신고서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함

나. 과세대상 소득은 사례비 외에도 교회로부터 받는 퇴직사은품, 차량제공 등 각종 물적 혜택까지 포함

1) 성직자 중 목회자와 수도회 회원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미사 등에서 받은 헌금, 사례비도 소득에 포함됨

---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2017.6. 주요국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2) 1994년 미조세법정(the United States Tax Court)은 목회자들이 세금 보고 목적으로 목회자가 고용 직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7가지 테스트 기준을 적용하였음(미국 장로교 연금금,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사회보장세 안내", 2001)
- 자세한 업무 내용에 대한 고용 기관의 간섭 정도
- 업무를 위한 시설의 제공 여부
- 관계의 지속성
- 직원이 이익이나 손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지의 여부
- 양쪽이 생각하는 관계
- 고용주의 직원 해고에 관한 권리 유무
- 업무가 고용주의 정규 사업의 일부인가

2) 헌금이 종교기관에 제공된 것이라면 성직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종교단체에 귀속된 성직자가 외부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귀속된 종교단체에 지급한 경우, 그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되, 해당 금액은 자선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 비과세소득은 교리에 따라 임명된 목회자에게 목회자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목사관의 임대가치 및 주택임대 보조금 등으로 이를 총소득에서 제외함[3)]

1) 급여에 포함된 주택 관련 보조금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고용하는 교회나 수도회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해당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함[4)]

2) 주택임대 보조금을 주택 임대에 사용하고 있고, 주택의 임대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주택임대 보조금을 차감할 수 있음

라. 종교인과 근로자의 과세제도 및 세무조사 비교

1) 성직자의 소득(earning for clergy)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수수료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모두 개인소득세 체계에 따라 총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2)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종교단체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3) 세대상 소득의 범위도 일반근로자와 성직자가 동일하지만 성직자의 급여에 포함된 주택관련 보조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4) 미국 세법 §7611조에서는 특정 상황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교회에 대해 질문검사권 및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상황은 교회가 면세대상 기관인지 여부 또는 비영리활동 외 수익활동을 하고 세금을 미납부 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함

5) 미국 침례교 소속 재단인 Guidestone Financial Resource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목회자에 대해서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5)]

---

3) 미국 세법 IRC §107조

4) 미국 재무부 시행규칙 Trea. Reg. §1.107-1(b)

5) Guidestone Financial Resource, "Ministrial Tax Issues", 11p, 2015.

〈 미국의 종교인과 근로자의 과세제도 비교 〉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범위	성직자와 종교단체 종사자로 구분	–
소득구분	근로소득(전일근무 목회자의 경우) 또는 사업소득 수수료 소득(종교활동 회 결혼, 장례 등 집도 사례금)	근로소득
과세대상 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 – 현금, 재화, 숙박, 음식, 의복, 서비스 등의 모든 형태 포함 – 현물은 공정시장 가치로 평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 – 현금, 재화, 숙박, 음식, 의복, 서비스 등의 모든 형태 포함 – 현물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
비과세소득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 – 소득세 목적상 비과세[1)2)] – 사회보장세 목적상 과세	특별한 규정 없음
공제항목	① 인적공제 ② 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 목회활동비: 항목별공제 신청시 기타 항목으로 공제 가능(단, 비과세소득에 할당된 부분은 비공제)[1)]	① 인적공제 ② 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세율	10~39.6%	10~39.6%
원천징수	– 원칙: 원천징수 – 두 가지 요건 충족시 원천징수 면제: ① 임명된 목회자 등 ② 목회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 – 단, 납부세액 $1,000 이상인 경우 추정납부의무 있음	원천징수

주: 1) 해당 내용은 성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2) 지급 이전에 해당 단체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임

2 영국

가. 영국 국세청 소득세 지침에 따르면 성직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됨[6)]

나. 과세소득은 성직자 신고서 양식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일반적인 소득, 비용보전목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으로 구분하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항목이 존재함

1) 일반적인 소득은 급여, 수수료 · 헌금, 목사관과 주택시설관련비용의 대리지급액, 상품권과 신용카드, 차량 등의 마일리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비용 보전 목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수취한 목사관 관련 수취액, 차량 제공,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설교를 한 후 받은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됨

나. 소득세법에 성직자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비과세 등을 규정[7)]

1) 전임성직자(full-time minister)가 종교업무 수행을 위해 주거지를 제공받는 경우*이로 인한 관련 혜택을 비과세[8)]

* 주거지의 법적소유권을 자선단체 또는 종교적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함

2) 종교인에 대한 사택 · 비품 제공, 교회재산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비과세 또는 공제

---

6) 영국 과세관청 소득세지침,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60005, 접속일자: 2017.06.22.

7) "full-time minister" means a person in full-time employment as a minister of a religious denomination (영국 소득세법 §290⑤)

8) Income Tax (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 Section 290.

3 독일

가. 독일의 종교인은 국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세제가 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독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행정직 · 군인 · 경찰 · 교사 외에 성직자까지 포함 (연방보수법에 의해 1호봉부터 16호봉까지 구분)

나. 종교분야의 결혼식 · 장례식 등 부수활동으로부터의 수입, 보험금, 실비 변상적 급여 등은 비과세

다.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손비 처리 가능

라. 교인들은 소득세의 8%(일부지역 9%)를 종교세로 납부하고, 교회 수익의 약 70%가 종교세로부터 확보
(교회에서 직접 원천징수 하거나 정부에서 징수를 대행)

* 독일 외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도 신도들에게 종교세 부과 (과세가능소득의 1~2% 정도 세율)

4 일본

가. 법령상 종교인소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과세

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되는 급여, 임금, 성과급, 상여금 외에 경제적 이익 등 다음의 현물소득이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9)]

1)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거주지

2)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의복

3)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식대, 경조사비, 생활비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4) 종교단체가 대신 부담한 자녀 학자금 등

9) 일본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다. 종교인이 근로 제공상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1) 통근 또는 출장비용, 직장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2) 종교인이 종교활동상 부득이하게 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 부지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제공받는 거주지

3) 종교단체가 스님 등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법의 등은 종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유니폼

5 프랑스

가. 프랑스의 종교인(신부, 목회자 등) 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있으나 최저임금의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비영리적 활동이라고 간주하여 납세의무 면제

나. 종교단체는 「국가와 종교단체 분리법」 및 세법의 적용을 받음

1) 1901년 이후 성당, 교회, 무슬림 사원 등은 종교적 문화단체로 등록('공개적인 종교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다. 공개적 종교행위 및 종교와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 면제

1) 극빈자 지원 활동, 연구 및 모금행사 등 경제활동으로 인한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2) 교회 소유 건물 등을 대여해서 받는 수입이 있는 경우 토지세 납세의무 있음

6 호주

가. 종교인 소득 관련 특례 적용 대상인 종교단체, 종교인, 종교활동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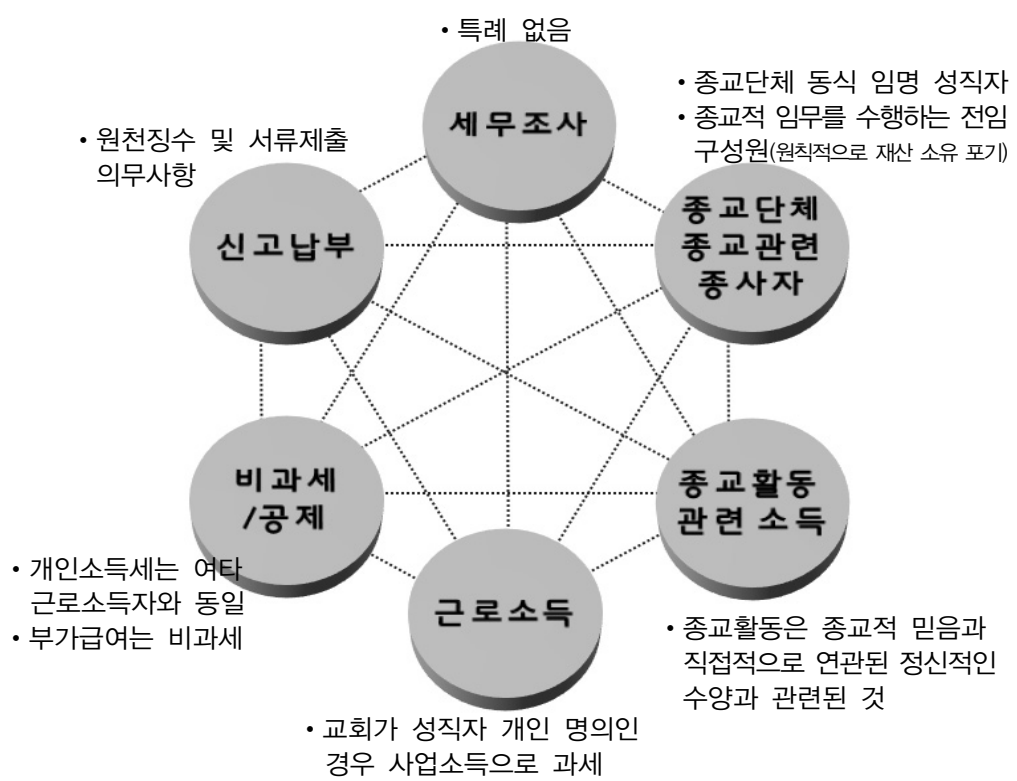
나. 종교인이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식 임명을 받아 영적인 활동을 하는 자 등

1) 다른 근로소득자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동일한 비과세 · 공제제도 운영

2) 대리목회, 장례식 · 결혼식의 대가로 종교단체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3)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활동의 대가로서 현물로 지급하는 차량, 주택 등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비과세

다. 호주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7 캐나다

가. 캐나다는 종교인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보수나 다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1) 소득이 없는 종교인이라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보수 등 사례금은 자선단체 신고서(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 Form T3010)상 '급여 임금 등 보수(Compensation, Schedule3)'란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파악에 용이함

– 캐나다의 종교인과 근로자의 과세제도 비교 –

	근로자	종교인
종교인범위	–	성직자로서 교구를 담당하거나 전임으로 고용된 자
소득구분	근로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1)]
과세대상소득범위	금전 및 현물 등을 모두 포괄함	근로자와 동일[2)]
비과세	(특수한 장소에 근무하는)근로자 거주비용, 보험수익,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등	근로자와 동일
공제항목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분됨	근로자와 동일 –다만, 종교인에 한해 필요경비 성격의 성직자 거주지 공제가 적용됨
세율	15~29%(누진세율)	근로자와 동일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와 동일
사회보험	퇴직연금(CPP), 고용보험, 노년보장연금(OAS) 등이 있음	근로자와 동일

주: 1)다만 Self employed income은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분류
2)종교인이 제공받는 숙박시설도 그 가치를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시킴

나. 캐나다의 경우 종교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규정 및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1) 캐나다는 매년 무작위선정, 소득신고서 대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및 과거현황 파악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지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는 종교인 또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제3장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제1절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종교인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2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가. 개념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연간 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 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고, 적은 경우 추가납부합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② 월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③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 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세액 산출사례

연간지급액 (월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원)		
	1명	2명	4명(6명으로 적용)
2,000만원 (월 167만원)	1,000	0	0
4,000만원 (월 333만원)	83,630	61,130	1,000
5,000만원 (월 417만원)	163,230	140,730	50,730

가정 : (1명)본인, (2명)본인+배우자, (4명)본인+배우자+자녀2명(20세이하)

* 추가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로 계산
  따라서, 위 표상 4명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의 수 2명을 더해 6명으로 적용

1)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2) 추가공제 대상자,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추가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3)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

4) 종교인소득 간이세액 산출방법

<table>
<tr><th>구 분</th><th>계 산 방 법</th></tr>
<tr><td>종교인소득
지급액</td><td>소속 종교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 연간 지급액 합계액 또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td></tr>
<tr><td>필요경비</td><td>
<table>
<tr><th>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액</th><th>필요경비</th></tr>
<tr><td>2천만원 이하</td><td>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td></tr>
<tr><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td>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td></tr>
<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
<tr><td>6천만원 초과</td><td>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able>
</td></tr>
<tr><td>소득금액</td><td>= 연간 종교인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td></tr>
<tr><td>기본공제</td><td>기본공제 : 공제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수 + 20세 이하 자녀 수로 적용</td></tr>
<tr><td>연금소득
공제</td><td>종교인이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 (총 지급액의 4.5%)</td></tr>
<tr><td>과세표준</td><td>연간종교인소득지급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연금소득공제</td></tr>
<tr><td>세율</td><td>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세율 20%</td></tr>
<tr><td>산출세액</td><td>과세표준 × 세율</td></tr>
<tr><td>세액공제</td><td>총지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는 총지급액의 2.3%(초과자는 정액 161만원)
+ 산출세액의 10% (90만원 한도)
* 종교인이 일반인보다 기부금등의 지출액이 높은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td></tr>
<tr><td>결정세액</td><td>산출세액 - 세액공제</td></tr>
<tr><td>간이세액</td><td>결정세액 ÷ 12개월 (원단위 이하 절사)</td></tr>
</table>

* 간이세액표 제공시에는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제외하고 산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나. 종교단체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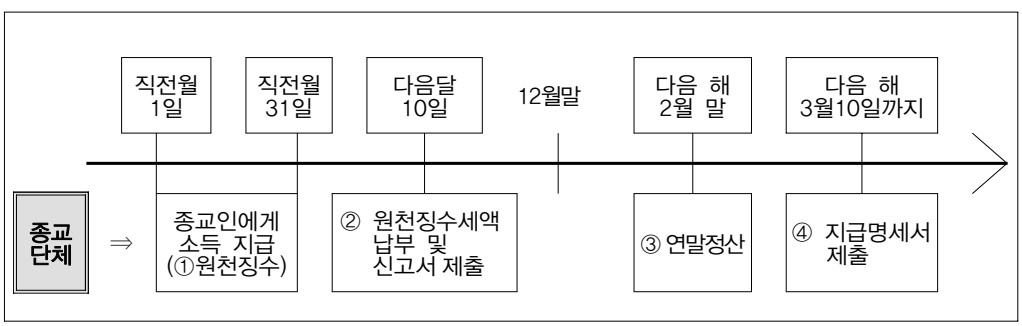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세액 납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일(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종교단체는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하고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가. 반기별 납부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 납부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반기별(6개월마다)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요건 및 기간 · 방법

① 신청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간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를 적용하고자 하는 전월에 신청합니다.

지급시기	신고 납부시기	신청기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1월 10일까지	2018년 6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019년 7월 10일까지	2018년 12월

③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신청 · 제출→일반 세무서류→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에서 서식 내려 받기)

8 원천징수세액 신고 · 납부 절차

가. 일반적인 경우(월별 납부)

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특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속 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고,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2018년 1월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2018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또는 홈택스)로 제출하고, 은행 등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나. 반기별납부의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 · 지정을 받은 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제출 방법

①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 합니다.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소득별 지급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④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반기별 신고 · 납부 승인의 경우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
-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납부
- 신용(체크)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통해 납부
- '17.12.27.부터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방식을 개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요령》

(1) 매월 납부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한 월입니다.

소득자가 종교활동 등을 제공한 월입니다.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종교단체 명을 적습니다.	대표자(성명)	종교단체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없는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교단체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입

종교인소득 기입

(2) 반기별 납부의 경우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8년 6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종교단체 명을 적습니다.	대표자(성명)	종교단체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없는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교단체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과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반기의 마지막(6월 또는 12월)의 인원입니다. 예를들어 1월~6월까지의 평균대상인원이 5명이었다하더라도, 6월말의 대상인원이 2명인 경우 2명으로 기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기재합니다.

①구 분	②귀속연월	③지급연월	④신고 · 납부
18년 1월~6월 지급시	18년 1월	18년 6월	18년 7월 10일까지
18년 7월~12월 지급시	18년 7월	18년 12월	19년 1월 10일까지

〈사례 1〉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매월 납부)

– 종교인 1명의 식대 100,000원(비과세소득)*, 과세대상소득 1,000,000원을 지급하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의 경우 ⑤총지급액란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8년 1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1	1,000,000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1	1,00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1,000,000						

〈사례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매월 납부)

– 종교인이 1명으로 식대 100,000원(비과세소득)*, 과세대상소득 1,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⑤총지급액에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인 급여, 사택제공이익 등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8년 1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1,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	1,00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1,000,000						

〈사례 3〉 종교인과 행정사무 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별로 작성하므로 종교인소득과 행정사무종사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합니다.

※ 예시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1,000,000원을 지급하고, 행정사무종사자에게 근로소득 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상황1)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 간이세액 (A01)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500,000원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매월징수(A43)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000,000원

(상황2)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 간이세액 (A01)란에 인원 2명, 총지급액 2,500,000원

(상황1) 종교인에게 식사비 100,000원, 과세대상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행정사무 종사자에게 식사비 100,000원, 과세대상급여 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 간이세액 (A01)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500,000원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매월징수(A43)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000,000원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8년 1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1,500,000	8,92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8,920				8,92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1	1,000,000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1	1,00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등			A69								
	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2,500,000	8,920				8,920	

(상황2) 종교인에게 식사비 100,000원, 과세대상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행정사무종사자에게 식사비 100,000원, 과세대상급여 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 간이세액 (A01)란에 인원 2명, 총지급액 2,500,000원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8년 1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	2,500,000	8,920				8,92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	2,500,000	8,920				8,92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등			A69								
	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2,500,000	8,920				8,920	

〈사례 4〉 A종교인에게 식사비 100,000원, 과세대상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B종교인에게 식사비 100,000원, 과세대상급여 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 A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B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 간이세액 (A01)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500,000원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매월징수(A43)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000,000원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8년 1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1,500,000	8,92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8,920				8,92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1	1,000,000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1	1,00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2,500,000	8,920				8,920	

알기쉬운 원천세 신고하기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서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서식 이름]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검색

※ 종교인소득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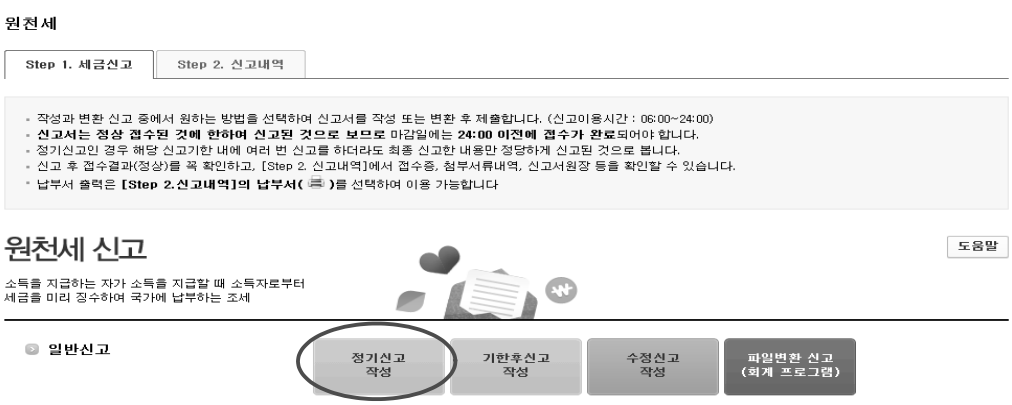
②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1) 기본정보 입력

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② **귀속연월, 사업자기본사항 및 원천징수신고구분(연말정산, 소득처분, 환급신청 여부)과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⑴ **귀속년월** : 소득자가 종료활동 등를 제공한 월을 입력합니다.

⑵ **연말정산포함** : 연말정산 소득 입력 시 체크합니다.

⑶ **환급신고** : 환급액을 차월로 이월하지 않고, 당월에 환급받을 경우 체크합니다.

⑷ **소득종류선택** : 해당 귀속 · 지급월에 동시에 지급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체크합니다.
예를들어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직원(근로소득)이 같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체크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① 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동일소득 내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같이 존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납부세액이 조정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5	5,000,000	5,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	A04						
연말정…	A05						
연말정…	A06						
가감계	A10	6	15,000,000	-5,000			

※ 연말정산_합계(A04)에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 및 총지급금액만 넣으며,
연말정산_분납신청(A05)에는 분납신청한 인원 및 분납신청금액을 넣고
연말정산_납부금액(A06)에는 연말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작성합니다.

› 기타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연금계좌	A41						
매월징수	A43	1	1,000,000	5,000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1	1,000,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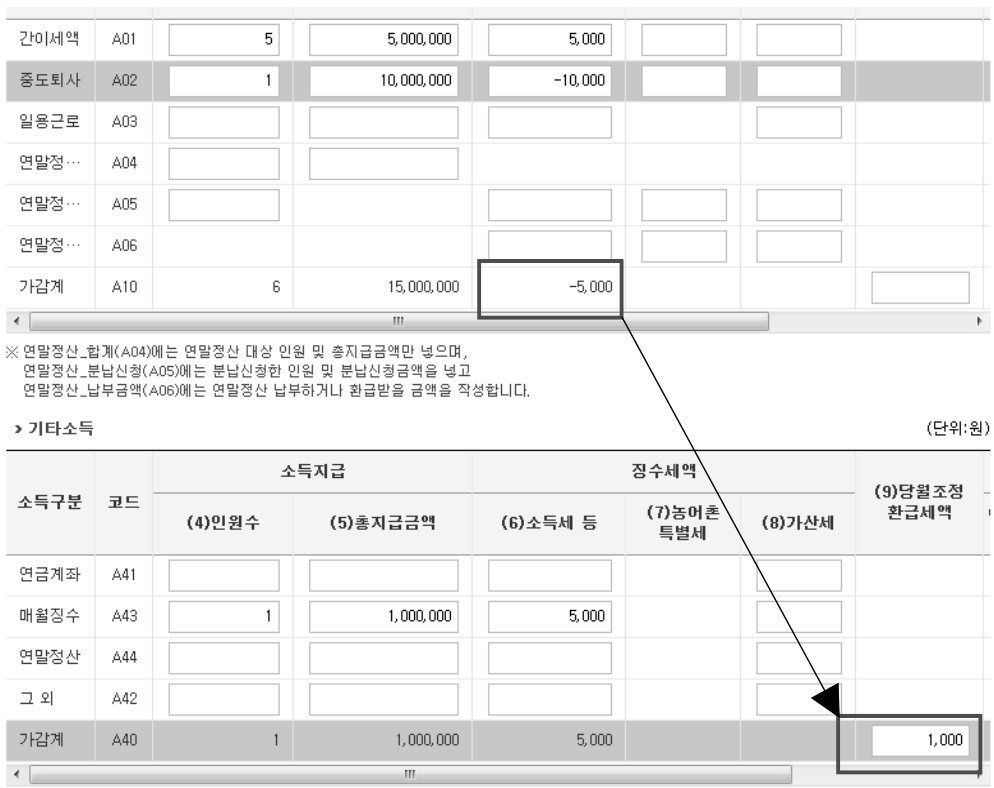
› 이자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이자소득	A50	1	1,500,000	1,000			

› 총 합계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총합계	A99	8	17,500,000	6,000			

② 타 소득에 조정환급을 해야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9)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양수금액**으로 입력하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간이세액	A01	5	5,000,000	5,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	A04						
연말정…	A05						
연말정…	A06						
가감계	A10	6	15,000,000	-5,000			

※ 연말정산_합계(A04)에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 및 총지급금액만 넣으며,
연말정산_분납신청(A05)에는 분납신청한 인원 및 분납신청금액을 넣고
연말정산_납부금액(A06)에는 연말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작성합니다.

› 기타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연금계좌	A41						
매월징수	A43	1	1,000,000	5,000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1	1,000,000	5,000			1,000

홈택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원천세전자신고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메뉴에서 세목을 선택하여 납부

▦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요약 및 특례

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②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도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종교단체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은행에 납부합니다.
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2절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매월 또는 반기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19년 2월까지 연말정산합니다.

②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1)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 **2018.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제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단체는 2018.12.31.까지 뒷페이지의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17. 3. 10.>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원천징수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종교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포 기) 내 용

⑨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도 소득분부터							
⑩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 세 기 간			년도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관리번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 · 세액 공제항목 】

구 분	공 제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투자조합 출자 등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종교인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는 종교인 본인 및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	구 분	공제금액 · 한도	공 제 요 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항목	구 분		공제금액 · 한도	공 제 요 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

구 분	내 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종교인 본인에 한정), 한부모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 종교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인적공제대상 가족(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연말정산대상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종교인의 공제대상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종교인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종교인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종교인이 공제

①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교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ⅰ)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ⅱ)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ⅲ)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배우자	×	○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ⅳ) 소득금액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인의 당해연도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종교인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종교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종교인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종교인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없음)

종교인이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종교인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 보험료의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연간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종교인이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종교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종교인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 · 손녀는 대상 아님)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 6세 이하 :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 출생 · 입양 : 1명당 3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납액입의 12%(종교인소득 5천5백만원 이하 15%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내 용	공제액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12%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6) 공제관련 증빙서류

① 인적공제 관련 증빙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인적공제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 · 군 · 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 · 면 · 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 군 · 구청
인적공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읍 · 면 · 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 소득 ·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5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	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2%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적용함

6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종교단체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종교인에게 지급한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7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서식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릅니다

1)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

종교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6)에 따른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4)에 따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종교인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여부과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같습니다.
> 1)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종교단체가 휴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3절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사 직원의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종교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 간이세액표

② 반기별 납부자도 종교인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합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 기록 의무

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반기)

①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합니다.

②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 : 제출월(기한 후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 ○ 이용시간 : 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
  -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
-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 삭제요청
- ○ 휴·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정확한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전자납부 이용시간 : 365일 07:00 ~ 22:00
-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 서울시(이택스 : http://etax.seoul.go.kr),
서울시 외(위택스 : http://www.wetax.go.kr)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내 용
조회납부	신고분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고지분 납부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자진납부		신고하거나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4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종교단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합니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5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아래의 표는 종교단체가 소속 행정업무 직원 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참고하기 쉽도록 일반적인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연간 근로소득</td><td>근로 제공 대가</td></tr>
<tr><td>비과세소득</td><td>학자금, 식사 · 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이 적용</td></tr>
<tr><td>총급여액</td><td>(=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 · 연금계좌 ·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td></tr>
<tr><td>(–)
근로소득
공제</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근로소득공제금액</th></tr>
<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70%</td></tr>
<tr><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tr>
<tr><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tr>
<tr><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tr>
<tr><td>1억원 초과</td><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tr>
</table>
</td></tr>
<tr><td>근로소득
금액</td><td>(=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인적공제</td><td>□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table>
<tr><th>부양가족</th><th>직계존속</th><th>직계비속</th><th>형제자매</th><th>위탁아동</th><th>수급자</th></tr>
<tr><td>나이요건</td><td>60세 이상</td><td>20세 이하</td><td>20세 이하
60세 이상</td><td>18세 미만</td><td>제한없음</td></tr>
</table>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table>
<tr><th>공제대상</th><th>경로우대
(70세 이상)</th><th>장애인</th><th>부녀자
(부양/기혼)</th><th>한부모*</th></tr>
<tr><td>공제금액</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
</table>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td></tr>
<tr><td>(–)연금
보험료공제</td><td>□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td></tr>
<tr><td>(–)특별
소득공제</td><td>□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3.8.13.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 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table>
<tr><th>공제종류</th><th colspan="2">공제금액(한도액)</th><th></th></tr>
<tr><td>㉠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td><td colspan="2">이자상환액 전액</td><td rowspan="3">※ 전체 (㉠+㉡+㉢) 한도액
㉠ 이 2015.1.1. 이후 차입 ·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기타방식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td></tr>
<tr><td>㉡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td><td>원리금
상환액
× 40%</td><td rowspan="2">공제한도:
Min(①, ②)
① : ㉡+㉢
② : 연300만원</td></tr>
<tr><td>㉢
주택마련저축
납입액</td><td>저축
납입액
× 40%</td></tr>
</table>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그 밖의
소득공제</td><td>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table>
<tr><th>근로(사업)소득 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table>
<tr><th>구 분</th><th>소득공제액</th><th>공제한도액</th></tr>
<tr><td>2015년 이후
출자 · 투자분</td><td>출자금액의 10%(100%, 50%, 30%)*</td><td>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td></tr>
</table>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15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는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 적용 + 전통시장 · 대중교통이용분 각각 100만원 추가 = 최대 500만원
<table>
<tr><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r><td>7천만원 이하</td><td>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td></tr>
<tr><td>7천만원~1억2천만원</td><td>300만원('18.1.1. 이후 250만원)</td></tr>
<tr><td>1억2천만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2018.12.31.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배제
</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td><td>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 · 50 · 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tr>
<tr><td>과세표준</td><td>(=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td></tr>
<tr><td>(×)
기본세율</td><td>
<table>
<tr><th>과 세 표 준</th><th>세율</th><th>산출세액 계산</th></tr>
<tr><td>1,200만원 이하</td><td>6%</td><td>과세표준의 6%</td></tr>
<tr><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td>15%</td><td>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td></tr>
<tr><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24%</td><td>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td></tr>
<tr><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35%</td><td>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tr>
<tr><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38%</td><td>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tr>
<tr><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40%</td><td>9,460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40%</td></tr>
<tr><td>5억원 초과</td><td>42%</td><td>17,46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42%</td></tr>
</table>
〈참고〉 간편법
<table>
<tr><th>과 세 표 준</th><th>산 식</th></tr>
<tr><td>1,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금액의 6%</td></tr>
<tr><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td></tr>
<tr><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td></tr>
<tr><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td></tr>
<tr><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td></tr>
<tr><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td></tr>
<tr><td>5억원 초과</td><td>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td></tr>
</table>
</td></tr>
<tr><td>산출세액</td><td>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td></tr>
</table>

구 분	내 용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18.12.31.까지 취업 시 3년(병역 이행 후 1년 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간 70%(150만원 한도) 감면 ('12년~'13년 취업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 시 100% 감면) ('14년~'15년 취업자가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 시 50% 감면) □ 소득세법상 감면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 외국인 기술자 감면(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년간) : 50% 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따라 교사, 교수에 대한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100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총 급 여 액	한 도 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 출생 ·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구 분	내 용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12%, 장애인전용 15%)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는 20%)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 •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 공제대상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15%) • 본인 :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공제대상 •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및 초 · 중 · 고생 1인당 연 300만원(초 · 중 · 고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장애인(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5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연 13만원) * 정치자금,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 납세조합공제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구 분	내 용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외국인근로자 중 단일세율 적용신청자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19% • 단일세율적용 신청자는 비과세, 공제 ·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함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현실적인 퇴직 이후라도 종교인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2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합니다.

3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아래의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 유족보상금 ·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재해부조금 ·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4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퇴직소득 과세방식**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40% 정률공제 폐지)
② (환산급여) ① ÷ 근속연수 × 12
③ (②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2%)
④ (연승) ③ ÷ 12 × 근속연수

1) 공제금액 계산

①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②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 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 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45%
3억원 초과	1억 5천 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35%

2)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5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한 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6 퇴직소득 세율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7 퇴직소득 산출세액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8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①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② 다만, 종교단체가 퇴직한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합니다.

지급시기 의제	종교단체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종교인이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 12월31일까지 미지급
다음 해 2월 말일	종교인이 12월에 퇴직,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9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교단체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교단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 대상

종교단체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한 경우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장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1절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가.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종교인소득 이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 기간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1.1.~12.31.	다음연도 5.1. ~ 5.3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1.1.~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다음연도 1.1.~5.31.중 사망(출국)시	1.1.~12.31. 다음연도1.1.~사망(출국)일	

3 납세지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 ·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분	납세지
종교인(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4 신고서 작성

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려는 자와,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인소득 외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	기본(본인·부양가족·배우자 人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고용유지근로자 임금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법인대표만)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소득공제등 종합합도초과액	○	○
과세표준				
(×) 세율(6~42%)				
산출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재해손실(자산상실비율 적용) 등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종류·금액별 100/110, 15%, 25%, 30%)	○	○
	표준세액공제(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7만원)	○(13만원)
	조특법	전자신고(2만원)	○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결정세액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이하 50%, 6천만원 이하 30%, 6천만원 초과 20%

**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70%, 1천5백만원 이하 40%, 4천5백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연간 종교인소득</td><td>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td></tr>
<tr><td>비과세소득
(p.28~p.30)</td><td>1.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본인의 학자금
2.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종교활동비* 등 포함)
* 종교활동비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월10만원 이내)
5. 사택제공이익</td></tr>
<tr><td>종교인소득 지급액</td><td>(= 연간 종교인 소득 - 비과세소득)</td></tr>
<tr><td>(-) 필요경비</td><td>
<table>
<tr><th>종교인이 받는 금액</th><th>필요경비</th></tr>
<tr><td>2천만원이하</td><td>80%</td></tr>
<tr><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td>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50%</td></tr>
<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30%</td></tr>
<tr><td>6천만원 초과</td><td>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20%</td></tr>
</table>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td></tr>
<tr><td>소득금액</td><td>(= 종교인소득지급액 - 필요경비)</td></tr>
<tr><td>(-)
인적공제</td><td>□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정 나이요건을 갖추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table>
<tr><th>공제대상</th><th>경로우대
(70세 이상)</th><th>장애인</th><th>부녀자
(부양/기혼)</th><th>한부모*</th></tr>
<tr><td>공제금액</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
</table>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배제(중복시 한부모공제 적용)
</td></tr>
<tr><td>(-)
연금보험료공제</td><td>□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td></tr>
<tr><td>(-)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td><td>□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출자금액의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15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td></tr>
</table>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종교인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기본세율	6%~42%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 출생 ·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5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세액공제 : 연 7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나.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연간 근로소득</td><td>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td></tr>
<tr><td>비과세소득</td><td>학자금, 식사 · 식사대, 실비변상액, 보육수당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규정 적용하되 종교활동비*를 포함
* 종교활동비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td></tr>
<tr><td>총급여액</td><td>(=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td></tr>
<tr><td>(–) 근로소득공제</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근로소득공제금액</th></tr>
<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70%</td></tr>
<tr><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tr>
<tr><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tr>
<tr><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tr>
<tr><td>1억원 초과</td><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tr>
</table>
</td></tr>
<tr><td>근로소득금액</td><td>(=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td></tr>
<tr><td>(–)
인적공제</td><td>□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정 나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table>
<tr><th>공제대상</th><th>경로우대
(70세 이상)</th><th>장애인</th><th>부녀자
(부양/기혼)</th><th>한부모*</th></tr>
<tr><td>공제금액</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
</table>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배제(중복시 한부모공제 적용)</td></tr>
<tr><td>(–)
연금보험료
공제</td><td>□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특별소득
공제</td><td>□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3.8.13.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 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td></tr>
<tr><td>(-)
그 밖의
소득공제</td><td>□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table>
<tr><th>근로(사업)소득 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출자금액의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15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는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 적용 + 전통시장 · 대중교통이용분 각각 100만원 추가 = 최대 500만원
<table>
<tr><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r><td>7천만원 이하</td><td>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td></tr>
<tr><td>7천만원~1억2천만원</td><td>300만원('18.1.1. 이후 250만원)</td></tr>
<tr><td>1억2천만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td><td>□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배제</td></tr>
<tr><td>과세표준</td><td>(=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소득공제)</td></tr>
<tr><td>(×)
기본세율</td><td>6%~42%</td></tr>
<tr><td>산출세액</td><td>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td></tr>
<tr><td>(–)
세액감면
세액공제</td><td>□ 근로소득세액공제
<table>
<tr><th>산 출 세 액</th><th>세액공제 금액</th></tr>
<tr><td>130만원 이하</td><td>산출세액의 55/100</td></tr>
<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td></tr>
</table>
<table>
<tr><th>총 급 여 액</th><th>한 도 액</th></tr>
<tr><td>3,300만원 이하</td><td>74만원</td></tr>
<tr><td>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td>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66만원</td></tr>
<tr><td>7,000만원 초과</td><td>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50만원</td></tr>
</table>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 출생 ·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td></tr>
</table>

구 분	내 용
(–) 세액감면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12%, 장애인전용 15%)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는 20%)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 •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 공제대상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15%) • 본인 :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공제대상 •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장애인(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5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연 13만원) * 정치자금,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 납세조합공제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6 종합소득세 세율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 세 표 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42%

〈참고〉 간편법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7 신고서 제출방법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

①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8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가. 납부

종교인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5월 1일~5월31일 중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납부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나.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제2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절 무신고 · 과소신고시 불이익 등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 · 과소신고시 불이익

종교인 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 신고

1) 수정신고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근로 · 자녀장려금

1 종교인소득과 근로 · 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교인소득의 신고 · 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 종교인 소득('18년 귀속)에 대한 장려금은 '19년부터 신청 가능

2 근로장려세제(EITC)

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 및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table>
<tr><th>수급요건</th><th>세 부 내 용</th></tr>
<tr><td>가구요건</td><td>①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이거나 ② 30세 이상 단독가구(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td></tr>
<tr><td>소득요건</td><td>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tr><th>가구원 구성</th><th>연간 총소득기준금액</th><th>지급액</th></tr>
<tr><td>단독 가구</td><td>1,300만원</td><td>3~85만원</td></tr>
<tr><td>홑벌이 가구</td><td>2,100만원</td><td>3~200만원</td></tr>
<tr><td>맞벌이 가구*</td><td>2,500만원</td><td>3~250만원</td></tr>
</table>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td></tr>
<tr><td>재산요건</td><td>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td></tr>
</table>

*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20%~90%)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3 자녀장려세제(CTC)

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 등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table>
<tr><th>수급요건</th><th>세 부 내 용</th></tr>
<tr><td>가구요건</td><td>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것</td></tr>
<tr><td>소득요건</td><td>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tr><th>가구원 구성</th><th>연간 총소득기준금액</th><th>지급액
(자녀1인당)</th></tr>
<tr><td>단독 가구</td><td>-</td><td>-</td></tr>
<tr><td>홑벌이 가구</td><td rowspan="2">4,000만원</td><td rowspan="2">30 ~ 50만원</td></tr>
<tr><td>맞벌이 가구</td></tr>
</table></td></tr>
<tr><td>재산요건</td><td>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td></tr>
</table>

*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근로장려세제와 동일

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

나.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 방법은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청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신청 : 국세청 홈택스, ARS,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
** 서면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신청안내문(4월말~5월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홈택스 간편신청, ARS, 모바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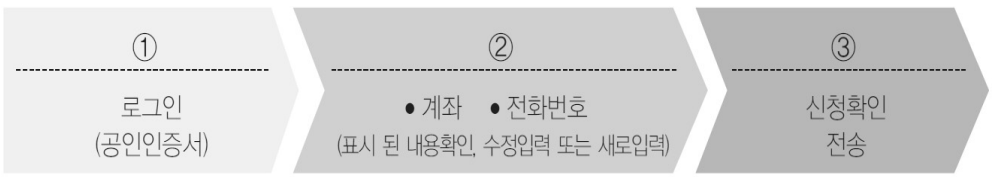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편 등으로 서면 신청(ARS, 모바일 신청 불가능)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가능
장려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모바일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미리 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대상 여부 확인 (모바일)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대상 여부 확인

다.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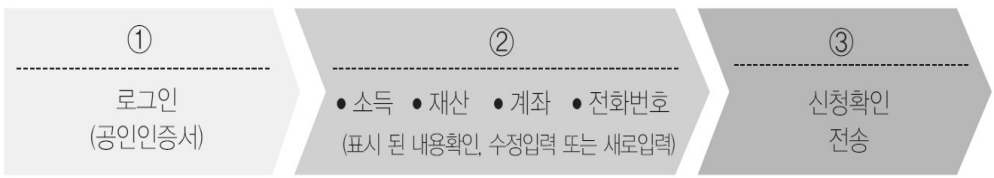
1) 홈택스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2) 홈택스 신청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공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만으로 신청가능

3) ARS 신청 (이용시간 06 ~ 2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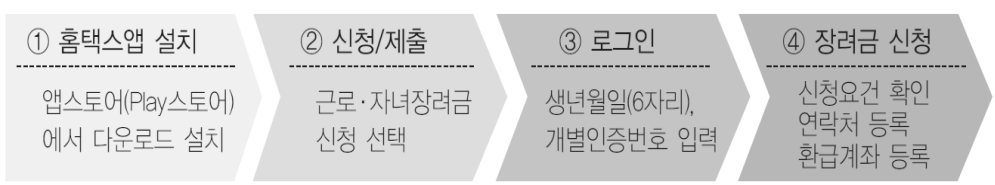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합니다.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4) 모바일 신청 (이용시간 06 ~ 23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 · 감액

가.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하며,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감액 · 증액)될 수 있습니다.

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감액 유형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 합계 1억원 이상	장려금 50% 차감하여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 10% 차감하여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대상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장려금 지급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 · 자녀장려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참고1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참고 법령

1 종교단체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 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중간 생략)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나.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2종류로 구분된다.

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이는 비록 등기되지 않았으나, 일단 설립허가 · 인가 등록 또는 재산출연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 민법상의 제 문제

민법의 설립허가주의에 의거 허가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갈음되는 법령에 의한 등록한 단체이나, 다만 등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보는 사례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 ·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정세 46101-3455, 1996.10.1. 같은 뜻 재경원 기법 46010-49, 1997.12.19)

② 노동조합은 그 설립신고를 필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재경부 조세46010-49, 1998.5.2)

나.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1) 요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법인격 없는 단체 중

①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③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 세 가지의 요건은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음)

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따라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민법이 규정하는 종교 · 자선 ·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민법 제32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1).

2) 승인절차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① 단체의 명칭

②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

④ 고유사업

⑤ 재산상황

⑥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그 승인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 거주자로서 변경제한 및 승인취소

승인을 받아 법인이 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앞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따라서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이 규정은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즉 일종의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여 맡은 이상 계속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뜻이며,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여받은 혜택만큼 존속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4) 납세번호의 부여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 선임(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또한 대표자 등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3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법령

가. 소득구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5호 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12조 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 제5호 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 제5호 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직료 · 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 · 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 제5호 아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⑯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④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법 제1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 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기타 종교인소득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70조【질문 · 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질문 · 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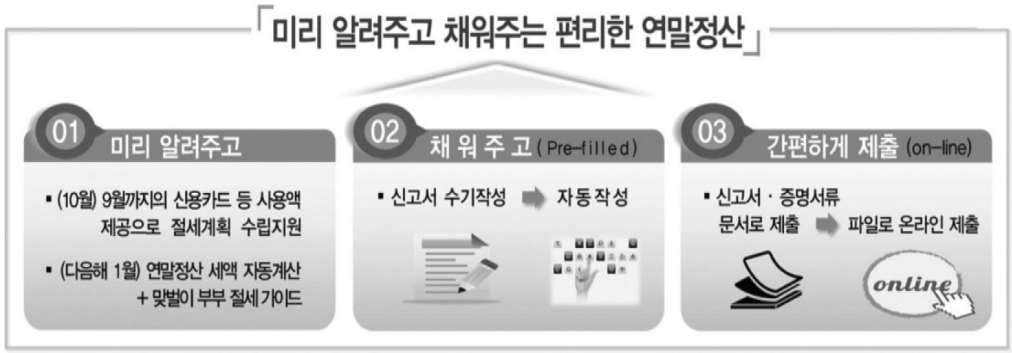
②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 · 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 ·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참고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Tax-plan)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자신이 자동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모르는 부양가족,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본인이 직접 추가 입력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Pre-filled)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본인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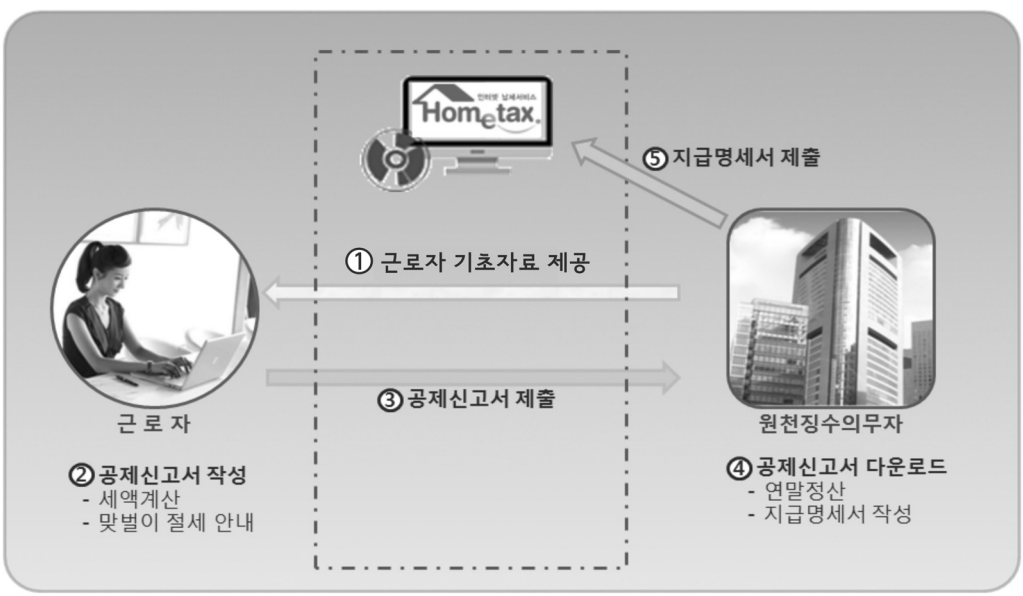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및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간편제출 서비스 (On-line)

○ **(간편 온라인 제출)** 본인이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일괄다운 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합니다.**

* 회사에서 본인의 기초자료(인적사항, 총급여, 4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등록 선행이 필요합니다.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흐름



①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 지급내역 등을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② 본인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제공한 소득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종류		제공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10월 중순 제공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절세Tip, 유의사항, 3년간 추세 등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전 항목 수동입력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채워주기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세부담 최소화하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안내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수동 작성 ⇨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5종 중 4종) * 종전에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만 자동작성(공무원, 대기업 등)
간편제출 서비스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근로자	원클릭으로 회사 제출가능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희망하여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및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연동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 · 세액공제 영수증은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신청,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8.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구 분	공제항목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초 · 중 · 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 ·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참고3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서식

번호	내 용	관련규정	서식명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위해 신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	종교단체 설립시 신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③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소득규칙 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④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⑤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 단체에 제출	소득규칙 37호(2)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용)
⑥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소득규칙 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⑧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⑨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⑩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⑩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규칙 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⑨	근로소득 또는 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규칙 40호(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 서식 개정 예정

[서식①]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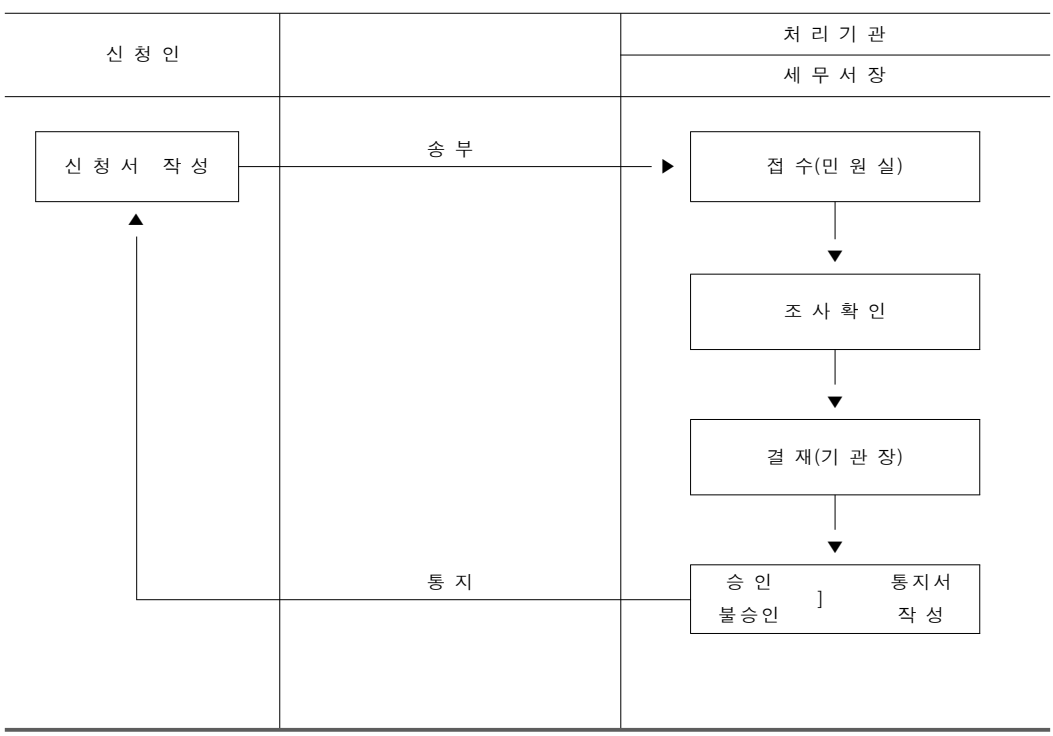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②]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5.3.1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 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익법인				외국·외투법인	국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4. 사업장현황

사업의 종류						사업(수익사업) 개시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별소비세				주류면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제조	판매	장소	유흥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 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서식③]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 3. 10.>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장주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단위: 원)

월	인원	적용연도		직전연도		비 고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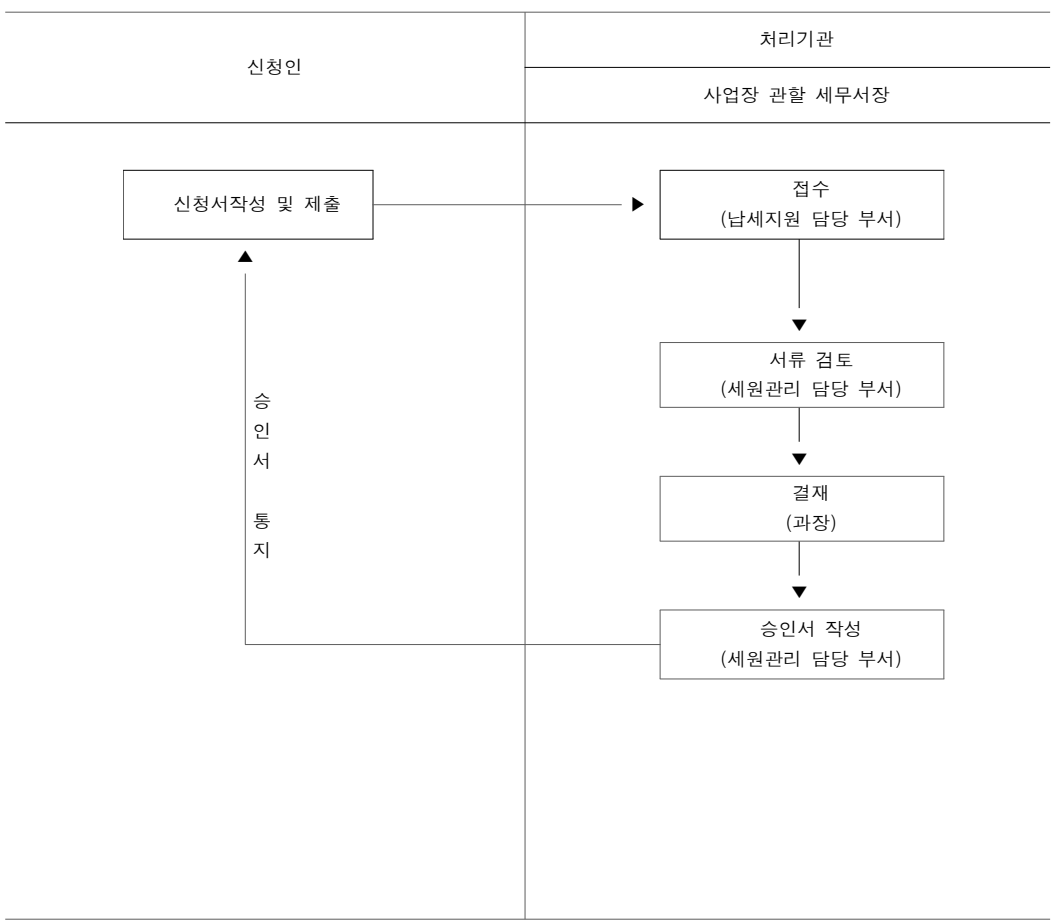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④]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미달, 일부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금융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05+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작성방법 (2)

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⑮ ~ ⑰)란의 ⑯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 지급월 201X년 12월 ,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 지급월 201X년 6월 ,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 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소득공제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Ⅳ.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table>
<tr><td>기부금(이월분)</td><td>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td></tr>
<tr><td>개인연금저축공제</td><td>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td></tr>
<tr><td>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td><td>「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출자 · 투자금액</th><th>공제율</th><th>한 도 액</th></tr>
<tr><td>조합 등</td><td></td><td>10%</td><td rowspan="4">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td></tr>
<tr><td rowspan="3">벤처 등</td><td>1천5백만원 이하</td><td>100%</td></tr>
<tr><td>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td><td>50%</td></tr>
<tr><td>5천만원 초과분</td><td>30%</td></tr>
</table>
</td></tr>
</table>

세액공제 작성방법

<table>
<tr><td>연금계좌</td><td>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td></tr>
<tr><td>기부금</td><td>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td></tr>
<tr><td>외국납부공제</td><td>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td></tr>
</table>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17. 3. 10.>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원천징수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종교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포 기) 내 용

⑨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 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⑩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 세 기 간		년도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관리번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4)] <신설 2017. 3. 10.>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관련)

징수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가족사항	⑦ 배 우 자	유·무	⑪ 70세 이상	명
	③ 소 재 지					부양가족 ⑧ 20세 이하	명	⑫ 장 애 인	명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 녀 자	여·부
	⑥ 주 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 부 모	여·부

⑮ 월 별	⑯ 지급일	⑰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 ⑱ 소득세	⑲ 지방소득세	⑳ 월 별	㉑ 지급일	㉒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 ㉓ 소득세	㉔ 지방소득세
1월분	. . .				7월분	. . .			
2월분	. . .				8월분	. . .			
3월분	. . .				9월분	. . .			
4월분	. . .				10월분	. . .			
5월분	. . .				11월분	. . .			
6월분	. . .				12월분	. . .			
					계				

㉕ 종교인소득(=⑰+㉒)	소득금액의 계산 ㉖ 종교인소득(=㉕)	㉗ 필요경비	㉘ 소득금액(㉖-㉗)

㉙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㉚ 본 인		㊵ 종합소득공제계		㊶결 정 세 액				
	㉛ 배 우 자		㊶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㉜ 부양가족		㊷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㊷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추가공제	㉝ 경로우대		㊸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㉞ 장 애 인		㊹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㊸ 주(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㉟ 부 녀 자		㊺ 산 출 세 액						
	㊱ 한부모가족		㊻ 세액공제 ㊻ 자녀세액공제		㊹ 차감원천징수세액				
㊲ 연 금 보 험 료 공 제			㊼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이월분)	㊳ 지정기부금		㊽ 기부금세액공제		㊺ 차감환급세액				
	㊴ 지정기부금 외		㊾ 표준세액공제						
			㊿ 외국납부세액공제						

64㎜×257㎜ (백상지(1종) 70g/㎡)

[서식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신설 2017. 3. 10.>

관리번호	
① 귀속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소득금액	⑮ 종교인소득(⑭)	⑯ 필요경비	⑰ 소득금액(⑮-⑯)

⑱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⑰)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⑲ 본 인		㉛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㉚ 결정세액				
		⑳ 배우자		㉜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세액	㊵ 종(전) 근무지				
		㉑ 부양가족 (명)		㉝ 산출세액			㊶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㉒ 경로우대 (명)		㉞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명)	㊷ 차감 납부할 세액				
		㉓ 장애인 (명)			6세이하(명)					
		㉔ 부녀자			출산·입양자(명)					
		㉕ 한부모가족		㉟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연금보험료공제				㊱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㉗ 기부금(이월분)					법정					
㉘ 종합소득공제 계					우리사주조합					
㉙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지정					
㉚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㊲ 표준세액공제						
				㊳ 외국납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㊸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㉛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㊷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7.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⑧ 세액 집계현황			
							⑨ 소득세	⑩ 지방 소득세	⑪ 농어촌특별세	⑫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⑬ 소득 구분코드	⑭ 소득자 성명(상호)	⑮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⑯ 내・외국인	⑰ 지급 연도	⑱ 지급 건수	⑲ (연간) 지급총액	⑳ 필요 경비	㉑ 소득 금액	㉒ 세율	㉓ 소득세	㉔ 지방 소득세	㉕ 농어촌 특별세	㉖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⑬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㉓란부터 ㉖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와 ⑦ 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⑭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⑱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⑯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⑲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소득금액란은 ⑲ (연간)지급총액에서 ⑳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⑬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300만원한도를 적용)
* 71 ~ 76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⑲-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OX					
⑱-1야간근로수당	OOX					
⑱-2출산·보육수당	QOX					
⑱-4 연구보조비	HOX					
⑱-5						
⑱-6						
~						
⑱-29						
⑲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Ⅲ 세액명세

구 분			㉘ 소 득 세	㉙ 지방소득세	㉚ 농어촌특별세
㉒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㉓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㉔ 주(현)근무지				
㉕ 납부특례세액					
㉖ 차 감 징 수 세 액(㉒-㉓-㉔-㉕)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Ⅳ 정산명세

종합소득공제	㉑ 총급여(⑯,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㉒ 근로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㉔ 본 인									
		㉕ 배 우 자									
		㉖ 부 양 가 족(명)									
	추가공제	㉗ 경 로 우 대(명)									
		㉘ 장 애 인(명)									
		㉙ 부 녀 자									
		㉚ 한 부 모 가 족									
	연금보험료공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	㉝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고용보험료								
		㉞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㉟ 기부금(이월분)									
		㊱ 계									
	㊲ 차 감 소 득 금 액										
	㊳ 개인연금저축										
	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㊵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㊶ 투자조합출자 등										
	㊷ 신용카드등 사용액										
	㊸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㊹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㊺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㊻ 그 밖의 소득공제 계										
	㊼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㊽ 종합소득 과세표준						
	㊾ 산출세액						
세액감면	㊿ 「소득세법」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3) 조세조약						
	(54) 세 액 감 면 계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56)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6세 이하 (명)					
		출산·입양자 (명)					
	연금계좌	(57)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0)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3)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계					
		(65) 표준세액공제					
	(66) 납세조합공제						
	(67) 주택차입금						
	(68) 외국납부						
	(69)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70) 세 액 공 제 계						
	(71) 결 정 세 액(㊾-54-70)						

㉗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건강·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⑳ 비과세 소득 계"란 및 "⑳-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⑯-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㉗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㉑ 총급여"란에는 "⑯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⑯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㉝~㊴)"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㊳~㊻)"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㊼~㊾)"란과 "특별세액공제(㊿~㊺)"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관리 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㉛ 총수입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㉜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㉝ 종합소득금액: ㉛-㉜	
㉞ 소득공제: ㉟~㊺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㊻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㉟ 본 인		
					㊱ 배 우 자		
					㊲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㊳ 경 로 우 대 자		
					㊴ 장 애 인		
					㊵ 부 녀 자		
					㊶ 한 부 모 가 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㊺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㊻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㊼ 과세표준: ㉝-㉞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㊽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㊾ 산출세액: ㊼ × ㊽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㊿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51~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5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 · 입양 자녀 ※ 출산 ·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㊹ 표준세액공제: 7만원(㊶~㊸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㊺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㊻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㊽ 결정세액: ㊾-㊿("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㊾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㊿~(62))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60)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61)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62)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63) 총결정세액: (58)+(59)		
기납부세액	(64) 원천징수세액[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63)-(64)		

❶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66)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47)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7)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68) 산출세액: (66)×(67)-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69) 세액공제·감면: (50) ×10%	
(70)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71)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64)×10%	
(72)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68)-(69)+(70)-(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⑪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㉛ 총수입금액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㉜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㉟)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㊲):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㊳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㊴ 장애인 1명당 200만원

㊵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㊶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㊵과 중복인 경우 ㊶을 적용)

10.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㊹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㊺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작성방법

13. ㊻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㊽ 세율란 및 ㊾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㊼)×세율(㊽)－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5. ㊷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공제액: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㊸ 기부금세액공제 및 ㊻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법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30%

㉢ 지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㊸): "가" 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㊻):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㊼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㊿ 무신고가산세 및 (61)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9. (64) 원천징수세액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대가(종교인소득)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의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0. ❶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68)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과세표준(㊻)×세율(㊼)－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70) 가산세액란은 「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❸ 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⓫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⓬ 세액감면명세서·⓭ 세액공제명세서·⓮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⓯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⓰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⓴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1.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3. [　　]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접 수 자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접수일(인)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⑧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4], [12], [11], [20], [31], [32], [40]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1]기장 [2]조정 [3]신고 [4]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⑲ 종합소득금액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⑳ 소득공제란: ❿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세율란·㉓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⓴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㉔ 세액감면란·㉕ 세액공제란: ⓬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⓭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㉗·㊺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㉗ 가산세는 ⓯ 가산세명세서의 ⑯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㉘·㊻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㉘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㊻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㉚·㊽ 기납부세액란: ⓰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㉘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㉙ 합계 금액에서 ㉚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14. ㉜·㉝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㉜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㉝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㉞ 분납할세액란: ㉛ 납부할 총세액에서 ㉜㉝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지방소득세란: ㊶ 과세표준란에는 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㊷ 세율란·㊸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㊹ 세액감면 및 ㊺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㊼ 가산세액란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㊽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㊿ 기납부세액은 ㉚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⓯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농어촌특별세란: ㊶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⑱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㊼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㊹+㊺-㊻)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4년 ~ 2016년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7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서식⑧]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17. 3. 17.>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 **정 기(　)** **기한후(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4쪽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 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4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예 [ ] 아니오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 아니오 [ ]
공통	QA.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 · 건물 · 주택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B.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❹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 ·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⑩ 임차인 성 명	⑪ 임대인 성 명	⑪ 임대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주택	⑬ 종 류 상가 등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근로소득(총급여액)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㉑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㉗ 업종코드	㉘ 조정률	㉙ 사업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㉛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재	원	원
감액금액	㉜ 재산 1억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을 기재	원	원
	㉝ 기 한 후 신 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㉛ × 10%	원	원
		(재산합계 1억원 이상) (㉛-㉜) × 10%	원	원
㉞ 신청금액(㉛-㉜-㉝)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자녀장려금은 신청금액(㉞)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❼ 수령계좌 신고 | ㉟ 금융회사등 | | ㊱ 계좌번호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 청산금 납입 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❷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❸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공통]

QA.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❺ 총급여액 등

1. "⑳ **근로소득(총급여액)**"란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㉙ **사업소득**"란은 ㉕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4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제4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종교관련종사자가 연간 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임.

가. 적용산식

> [{(매월 지급하는 소득 × 12 또는 연간 지급하는 소득) − 필요경비(8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 − 기본공제 − 연금소득공제] × 세율(20퍼센트) −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 결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나.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 금액

> 총지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총지급액의 2.3퍼센트(총지급액 7천만원 초과자는 161만원) + 결정세액의 10퍼센트(90만원 한도)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추가공제 대상자 또는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추가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함.

5.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995	1,000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1,060	1,065	–	–	–	–	–	–	–	–	–	–
1,065	1,070	–	–	–	–	–	–	–	–	–	–
1,070	1,075	–	–	–	–	–	–	–	–	–	–
1,075	1,080	–	–	–	–	–	–	–	–	–	–
1,080	1,085	–	–	–	–	–	–	–	–	–	–
1,085	1,090	–	–	–	–	–	–	–	–	–	–
1,090	1,095	–	–	–	–	–	–	–	–	–	–
1,095	1,100	–	–	–	–	–	–	–	–	–	–
1,100	1,105	–	–	–	–	–	–	–	–	–	–
1,105	1,110	–	–	–	–	–	–	–	–	–	–
1,110	1,115	–	–	–	–	–	–	–	–	–	–
1,115	1,120	–	–	–	–	–	–	–	–	–	–
1,120	1,125	–	–	–	–	–	–	–	–	–	–
1,125	1,130	–	–	–	–	–	–	–	–	–	–
1,130	1,135	–	–	–	–	–	–	–	–	–	–
1,135	1,140	–	–	–	–	–	–	–	–	–	–
1,140	1,145	–	–	–	–	–	–	–	–	–	–
1,145	1,150	–	–	–	–	–	–	–	–	–	–
1,150	1,155	–	–	–	–	–	–	–	–	–	–
1,155	1,160	–	–	–	–	–	–	–	–	–	–
1,160	1,165	–	–	–	–	–	–	–	–	–	–
1,165	1,170	–	–	–	–	–	–	–	–	–	–
1,170	1,175	–	–	–	–	–	–	–	–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75	1,180	–	–	–	–	–	–	–	–	–	–
1,180	1,185	–	–	–	–	–	–	–	–	–	–
1,185	1,190	–	–	–	–	–	–	–	–	–	–
1,190	1,195	–	–	–	–	–	–	–	–	–	–
1,195	1,200	–	–	–	–	–	–	–	–	–	–
1,200	1,205	–	–	–	–	–	–	–	–	–	–
1,205	1,210	–	–	–	–	–	–	–	–	–	–
1,210	1,215	–	–	–	–	–	–	–	–	–	–
1,215	1,220	–	–	–	–	–	–	–	–	–	–
1,220	1,225	–	–	–	–	–	–	–	–	–	–
1,225	1,230	–	–	–	–	–	–	–	–	–	–
1,230	1,235	–	–	–	–	–	–	–	–	–	–
1,235	1,240	–	–	–	–	–	–	–	–	–	–
1,240	1,245	–	–	–	–	–	–	–	–	–	–
1,245	1,250	–	–	–	–	–	–	–	–	–	–
1,250	1,255	1,000	–	–	–	–	–	–	–	–	–
1,255	1,260	1,000	–	–	–	–	–	–	–	–	–
1,260	1,265	1,000	–	–	–	–	–	–	–	–	–
1,265	1,270	1,000	–	–	–	–	–	–	–	–	–
1,270	1,275	1,000	–	–	–	–	–	–	–	–	–
1,275	1,280	1,000	–	–	–	–	–	–	–	–	–
1,280	1,285	1,000	–	–	–	–	–	–	–	–	–
1,285	1,290	1,000	–	–	–	–	–	–	–	–	–
1,290	1,295	1,000	–	–	–	–	–	–	–	–	–
1,295	1,300	1,000	–	–	–	–	–	–	–	–	–
1,300	1,305	1,000	–	–	–	–	–	–	–	–	–
1,305	1,310	1,000	–	–	–	–	–	–	–	–	–
1,310	1,315	1,000	–	–	–	–	–	–	–	–	–
1,315	1,320	1,000	–	–	–	–	–	–	–	–	–
1,320	1,325	1,000	–	–	–	–	–	–	–	–	–
1,325	1,330	1,000	–	–	–	–	–	–	–	–	–
1,330	1,335	1,000	–	–	–	–	–	–	–	–	–
1,335	1,340	1,000	–	–	–	–	–	–	–	–	–
1,340	1,345	1,000	–	–	–	–	–	–	–	–	–
1,345	1,350	1,000	–	–	–	–	–	–	–	–	–
1,350	1,355	1,000	–	–	–	–	–	–	–	–	–
1,355	1,360	1,000	–	–	–	–	–	–	–	–	–
1,360	1,365	1,000	–	–	–	–	–	–	–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365	1,370	1,000	–	–	–	–	–	–	–	–	–
1,370	1,375	1,000	–	–	–	–	–	–	–	–	–
1,375	1,380	1,000	–	–	–	–	–	–	–	–	–
1,380	1,385	1,000	–	–	–	–	–	–	–	–	–
1,385	1,390	1,000	–	–	–	–	–	–	–	–	–
1,390	1,395	1,000	–	–	–	–	–	–	–	–	–
1,395	1,400	1,000	–	–	–	–	–	–	–	–	–
1,400	1,405	1,000	–	–	–	–	–	–	–	–	–
1,405	1,410	1,000	–	–	–	–	–	–	–	–	–
1,410	1,415	1,000	–	–	–	–	–	–	–	–	–
1,415	1,420	1,000	–	–	–	–	–	–	–	–	–
1,420	1,425	1,000	–	–	–	–	–	–	–	–	–
1,425	1,430	1,000	–	–	–	–	–	–	–	–	–
1,430	1,435	1,000	–	–	–	–	–	–	–	–	–
1,435	1,440	1,000	–	–	–	–	–	–	–	–	–
1,440	1,445	1,000	–	–	–	–	–	–	–	–	–
1,445	1,450	1,000	–	–	–	–	–	–	–	–	–
1,450	1,455	1,000	–	–	–	–	–	–	–	–	–
1,455	1,460	1,000	–	–	–	–	–	–	–	–	–
1,460	1,465	1,000	–	–	–	–	–	–	–	–	–
1,465	1,470	1,000	–	–	–	–	–	–	–	–	–
1,470	1,475	1,000	–	–	–	–	–	–	–	–	–
1,475	1,480	1,000	–	–	–	–	–	–	–	–	–
1,480	1,485	1,000	–	–	–	–	–	–	–	–	–
1,485	1,490	1,000	–	–	–	–	–	–	–	–	–
1,490	1,495	1,000	–	–	–	–	–	–	–	–	–
1,495	1,500	1,000	–	–	–	–	–	–	–	–	–
1,500	1,505	1,000	–	–	–	–	–	–	–	–	–
1,505	1,510	1,000	–	–	–	–	–	–	–	–	–
1,510	1,520	1,000	–	–	–	–	–	–	–	–	–
1,520	1,530	1,000	–	–	–	–	–	–	–	–	–
1,530	1,540	1,000	–	–	–	–	–	–	–	–	–
1,540	1,550	1,000	–	–	–	–	–	–	–	–	–
1,550	1,560	1,000	–	–	–	–	–	–	–	–	–
1,560	1,570	1,000	–	–	–	–	–	–	–	–	–
1,570	1,580	1,000	–	–	–	–	–	–	–	–	–
1,580	1,590	1,000	–	–	–	–	–	–	–	–	–
1,590	1,600	1,000	–	–	–	–	–	–	–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600	1,610	1,000	–	–	–	–	–	–	–	–	–
1,610	1,620	1,000	–	–	–	–	–	–	–	–	–
1,620	1,630	1,000	–	–	–	–	–	–	–	–	–
1,630	1,640	1,000	–	–	–	–	–	–	–	–	–
1,640	1,650	1,000	–	–	–	–	–	–	–	–	–
1,650	1,660	1,000	–	–	–	–	–	–	–	–	–
1,660	1,670	1,000	–	–	–	–	–	–	–	–	–
1,670	1,680	1,000	–	–	–	–	–	–	–	–	–
1,680	1,690	1,000	–	–	–	–	–	–	–	–	–
1,690	1,700	1,000	–	–	–	–	–	–	–	–	–
1,700	1,710	1,000	–	–	–	–	–	–	–	–	–
1,710	1,720	1,000	–	–	–	–	–	–	–	–	–
1,720	1,730	1,000	1,000	–	–	–	–	–	–	–	–
1,730	1,740	1,000	1,000	–	–	–	–	–	–	–	–
1,740	1,750	1,000	1,000	–	–	–	–	–	–	–	–
1,750	1,760	1,000	1,000	–	–	–	–	–	–	–	–
1,760	1,770	1,000	1,000	–	–	–	–	–	–	–	–
1,770	1,780	1,000	1,000	–	–	–	–	–	–	–	–
1,780	1,790	1,000	1,000	–	–	–	–	–	–	–	–
1,790	1,800	1,000	1,000	–	–	–	–	–	–	–	–
1,800	1,810	1,000	1,000	–	–	–	–	–	–	–	–
1,810	1,820	1,000	1,000	–	–	–	–	–	–	–	–
1,820	1,830	1,000	1,000	–	–	–	–	–	–	–	–
1,830	1,840	1,000	1,000	–	–	–	–	–	–	–	–
1,840	1,850	1,000	1,000	–	–	–	–	–	–	–	–
1,850	1,860	1,000	1,000	–	–	–	–	–	–	–	–
1,860	1,870	1,000	1,000	–	–	–	–	–	–	–	–
1,870	1,880	1,000	1,000	–	–	–	–	–	–	–	–
1,880	1,890	1,000	1,000	–	–	–	–	–	–	–	–
1,890	1,900	1,000	1,000	–	–	–	–	–	–	–	–
1,900	1,910	1,000	1,000	–	–	–	–	–	–	–	–
1,910	1,920	1,000	1,000	–	–	–	–	–	–	–	–
1,920	1,930	1,000	1,000	–	–	–	–	–	–	–	–
1,930	1,940	1,470	1,000	–	–	–	–	–	–	–	–
1,940	1,950	2,060	1,000	–	–	–	–	–	–	–	–
1,950	1,960	2,640	1,000	–	–	–	–	–	–	–	–
1,960	1,970	3,230	1,000	–	–	–	–	–	–	–	–
1,970	1,980	3,820	1,000	1,000	–	–	–	–	–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980	1,990	4,410	1,000	1,000	–	–	–	–	–	–	–
1,990	2,000	5,000	1,000	1,000	–	–	–	–	–	–	–
2,000	2,010	5,590	1,000	1,000	–	–	–	–	–	–	–
2,010	2,020	6,180	1,000	1,000	–	–	–	–	–	–	–
2,020	2,030	6,770	1,000	1,000	–	–	–	–	–	–	–
2,030	2,040	7,360	1,000	1,000	–	–	–	–	–	–	–
2,040	2,050	7,950	1,000	1,000	–	–	–	–	–	–	–
2,050	2,060	8,530	1,000	1,000	–	–	–	–	–	–	–
2,060	2,070	9,120	1,000	1,000	–	–	–	–	–	–	–
2,070	2,080	9,710	1,000	1,000	–	–	–	–	–	–	–
2,080	2,090	10,300	1,000	1,000	–	–	–	–	–	–	–
2,090	2,100	10,890	1,000	1,000	–	–	–	–	–	–	–
2,100	2,110	11,480	1,000	1,000	–	–	–	–	–	–	–
2,110	2,120	12,070	1,000	1,000	–	–	–	–	–	–	–
2,120	2,130	12,660	1,000	1,000	–	–	–	–	–	–	–
2,130	2,140	13,250	1,000	1,000	–	–	–	–	–	–	–
2,140	2,150	13,840	1,000	1,000	–	–	–	–	–	–	–
2,150	2,160	14,420	1,000	1,000	–	–	–	–	–	–	–
2,160	2,170	15,010	1,000	1,000	–	–	–	–	–	–	–
2,170	2,180	15,600	1,000	1,000	–	–	–	–	–	–	–
2,180	2,190	16,190	1,000	1,000	–	–	–	–	–	–	–
2,190	2,200	16,780	1,000	1,000	–	–	–	–	–	–	–
2,200	2,210	17,370	1,000	1,000	–	–	–	–	–	–	–
2,210	2,220	17,960	1,000	1,000	–	–	–	–	–	–	–
2,220	2,230	18,550	1,000	1,000	1,000	–	–	–	–	–	–
2,230	2,240	19,140	1,000	1,000	1,000	–	–	–	–	–	–
2,240	2,250	19,730	1,000	1,000	1,000	–	–	–	–	–	–
2,250	2,260	20,310	1,000	1,000	1,000	–	–	–	–	–	–
2,260	2,270	20,900	1,000	1,000	1,000	–	–	–	–	–	–
2,270	2,280	21,490	1,000	1,000	1,000	–	–	–	–	–	–
2,280	2,290	22,080	1,000	1,000	1,000	–	–	–	–	–	–
2,290	2,300	22,670	1,000	1,000	1,000	–	–	–	–	–	–
2,300	2,310	23,260	1,000	1,000	1,000	–	–	–	–	–	–
2,310	2,320	23,850	1,350	1,000	1,000	–	–	–	–	–	–
2,320	2,330	24,440	1,940	1,000	1,000	–	–	–	–	–	–
2,330	2,340	25,030	2,530	1,000	1,000	–	–	–	–	–	–
2,340	2,350	25,620	3,120	1,000	1,000	–	–	–	–	–	–
2,350	2,360	26,200	3,700	1,000	1,000	–	–	–	–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2,360	2,370	26,790	4,290	1,000	1,000	–	–	–	–	–	–
2,370	2,380	27,380	4,880	1,000	1,000	–	–	–	–	–	–
2,380	2,390	27,970	5,470	1,000	1,000	–	–	–	–	–	–
2,390	2,400	28,560	6,060	1,000	1,000	–	–	–	–	–	–
2,400	2,410	29,150	6,650	1,000	1,000	–	–	–	–	–	–
2,410	2,420	29,740	7,240	1,000	1,000	–	–	–	–	–	–
2,420	2,430	30,330	7,830	1,000	1,000	–	–	–	–	–	–
2,430	2,440	30,920	8,420	1,000	1,000	–	–	–	–	–	–
2,440	2,450	31,510	9,010	1,000	1,000	–	–	–	–	–	–
2,450	2,460	32,090	9,590	1,000	1,000	–	–	–	–	–	–
2,460	2,470	32,680	10,180	1,000	1,000	–	–	–	–	–	–
2,470	2,480	33,270	10,770	1,000	1,000	1,000	–	–	–	–	–
2,480	2,490	33,860	11,360	1,000	1,000	1,000	–	–	–	–	–
2,490	2,500	34,450	11,950	1,000	1,000	1,000	–	–	–	–	–
2,500	2,510	35,040	12,540	1,000	1,000	1,000	–	–	–	–	–
2,510	2,520	35,630	13,130	1,000	1,000	1,000	–	–	–	–	–
2,520	2,530	36,220	13,720	1,000	1,000	1,000	–	–	–	–	–
2,530	2,540	36,810	14,310	1,000	1,000	1,000	–	–	–	–	–
2,540	2,550	37,400	14,900	1,000	1,000	1,000	–	–	–	–	–
2,550	2,560	37,980	15,480	1,000	1,000	1,000	–	–	–	–	–
2,560	2,570	38,570	16,070	1,000	1,000	1,000	–	–	–	–	–
2,570	2,580	39,160	16,660	1,000	1,000	1,000	–	–	–	–	–
2,580	2,590	39,750	17,250	1,000	1,000	1,000	–	–	–	–	–
2,590	2,600	40,340	17,840	1,000	1,000	1,000	–	–	–	–	–
2,600	2,610	40,930	18,430	1,000	1,000	1,000	–	–	–	–	–
2,610	2,620	41,520	19,020	1,000	1,000	1,000	–	–	–	–	–
2,620	2,630	42,110	19,610	1,000	1,000	1,000	–	–	–	–	–
2,630	2,640	42,700	20,200	1,000	1,000	1,000	–	–	–	–	–
2,640	2,650	43,290	20,790	1,000	1,000	1,000	–	–	–	–	–
2,650	2,660	43,870	21,370	1,000	1,000	1,000	–	–	–	–	–
2,660	2,670	44,460	21,960	1,000	1,000	1,000	–	–	–	–	–
2,670	2,680	45,050	22,550	1,000	1,000	1,000	–	–	–	–	–
2,680	2,690	45,640	23,140	1,220	1,000	1,000	–	–	–	–	–
2,690	2,700	46,230	23,730	1,230	1,000	1,000	–	–	–	–	–
2,700	2,710	46,820	24,320	1,820	1,000	1,000	–	–	–	–	–
2,710	2,720	47,410	24,910	2,410	1,000	1,000	–	–	–	–	–
2,720	2,730	48,000	25,500	3,000	1,000	1,000	1,000	–	–	–	–
2,730	2,740	48,590	26,090	3,590	1,000	1,000	1,000	–	–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2,740	2,750	49,180	26,680	4,180	1,000	1,000	1,000	–	–	–	–
2,750	2,760	49,760	27,260	4,760	1,000	1,000	1,000	–	–	–	–
2,760	2,770	50,350	27,850	5,350	1,000	1,000	1,000	–	–	–	–
2,770	2,780	50,940	28,440	5,940	1,000	1,000	1,000	–	–	–	–
2,780	2,790	51,530	29,030	6,530	1,000	1,000	1,000	–	–	–	–
2,790	2,800	52,120	29,620	7,120	1,000	1,000	1,000	–	–	–	–
2,800	2,810	52,710	30,210	7,710	1,000	1,000	1,000	–	–	–	–
2,810	2,820	53,300	30,800	8,300	1,000	1,000	1,000	–	–	–	–
2,820	2,830	53,890	31,390	8,890	1,000	1,000	1,000	–	–	–	–
2,830	2,840	54,480	31,980	9,480	1,000	1,000	1,000	–	–	–	–
2,840	2,850	55,070	32,570	10,070	1,000	1,000	1,000	–	–	–	–
2,850	2,860	55,650	33,150	10,650	1,000	1,000	1,000	–	–	–	–
2,860	2,870	56,240	33,740	11,240	1,000	1,000	1,000	–	–	–	–
2,870	2,880	56,830	34,330	11,830	1,000	1,000	1,000	–	–	–	–
2,880	2,890	57,420	34,920	12,420	1,000	1,000	1,000	–	–	–	–
2,890	2,900	58,010	35,510	13,010	1,000	1,000	1,000	–	–	–	–
2,900	2,910	58,600	36,100	13,600	1,000	1,000	1,000	–	–	–	–
2,910	2,920	59,190	36,690	14,190	1,000	1,000	1,000	–	–	–	–
2,920	2,930	59,780	37,280	14,780	1,000	1,000	1,000	–	–	–	–
2,930	2,940	60,370	37,870	15,370	1,000	1,000	1,000	–	–	–	–
2,940	2,950	60,960	38,460	15,960	1,000	1,000	1,000	–	–	–	–
2,950	2,960	61,540	39,040	16,540	1,000	1,000	1,000	–	–	–	–
2,960	2,970	62,130	39,630	17,130	1,000	1,000	1,000	–	–	–	–
2,970	2,980	62,720	40,220	17,720	1,000	1,000	1,000	1,000	–	–	–
2,980	2,990	63,310	40,810	18,310	1,000	1,000	1,000	1,000	–	–	–
2,990	3,000	63,900	41,400	18,900	1,000	1,000	1,000	1,000	–	–	–
3,000	3,020	64,780	42,280	19,780	1,000	1,000	1,000	1,000	–	–	–
3,020	3,040	65,960	43,460	20,960	1,000	1,000	1,000	1,000	–	–	–
3,040	3,060	67,140	44,640	22,140	1,000	1,000	1,000	1,000	–	–	–
3,060	3,080	68,320	45,820	23,320	1,000	1,000	1,000	1,000	–	–	–
3,080	3,100	69,500	47,000	24,500	2,000	1,000	1,000	1,000	–	–	–
3,100	3,120	70,670	48,170	25,670	3,170	1,000	1,000	1,000	–	–	–
3,120	3,140	71,850	49,350	26,850	4,350	1,000	1,000	1,000	–	–	–
3,140	3,160	73,030	50,530	28,030	5,530	1,000	1,000	1,000	–	–	–
3,160	3,180	74,210	51,710	29,210	6,710	1,000	1,000	1,000	–	–	–
3,180	3,200	75,390	52,890	30,390	7,890	1,000	1,000	1,000	–	–	–
3,200	3,220	76,560	54,060	31,560	9,060	1,000	1,000	1,000	–	–	–
3,220	3,240	77,740	55,240	32,740	10,240	1,000	1,000	1,000	1,000	–	–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3,240	3,260	78,920	56,420	33,920	11,420	1,000	1,000	1,000	1,000	–	–
3,260	3,280	80,100	57,600	35,100	12,600	1,000	1,000	1,000	1,000	–	–
3,280	3,300	81,280	58,780	36,280	13,780	1,000	1,000	1,000	1,000	–	–
3,300	3,320	82,450	59,950	37,450	14,950	1,000	1,000	1,000	1,000	–	–
3,320	3,340	83,630	61,130	38,630	16,130	1,000	1,000	1,000	1,000	–	–
3,340	3,360	85,410	62,910	40,410	17,910	1,000	1,000	1,000	1,000	–	–
3,360	3,380	87,310	64,810	42,310	19,810	1,000	1,000	1,000	1,000	–	–
3,380	3,400	89,210	66,710	44,210	21,710	1,000	1,000	1,000	1,000	–	–
3,400	3,420	91,100	68,600	46,100	23,600	1,100	1,000	1,000	1,000	–	–
3,420	3,440	93,000	70,500	48,000	25,500	3,000	1,000	1,000	1,000	1,000	–
3,440	3,460	94,900	72,400	49,900	27,400	4,900	1,000	1,000	1,000	1,000	–
3,460	3,480	96,800	74,300	51,800	29,300	6,800	1,000	1,000	1,000	1,000	–
3,480	3,500	98,700	76,200	53,700	31,200	8,700	1,000	1,000	1,000	1,000	–
3,500	3,520	100,590	78,090	55,590	33,090	10,590	1,000	1,000	1,000	1,000	–
3,520	3,540	102,490	79,990	57,490	34,990	12,490	1,000	1,000	1,000	1,000	–
3,540	3,560	104,390	81,890	59,390	36,890	14,390	1,000	1,000	1,000	1,000	–
3,560	3,580	106,290	83,790	61,290	38,790	16,290	1,000	1,000	1,000	1,000	–
3,580	3,600	108,190	85,690	63,190	40,690	18,190	1,000	1,000	1,000	1,000	–
3,600	3,620	110,080	87,580	65,080	42,580	20,080	1,000	1,000	1,000	1,000	1,000
3,620	3,640	111,980	89,480	66,980	44,480	21,980	1,000	1,000	1,000	1,000	1,000
3,640	3,660	113,880	91,380	68,880	46,380	23,880	1,380	1,000	1,000	1,000	1,000
3,660	3,680	115,780	93,280	70,780	48,280	25,780	3,280	1,000	1,000	1,000	1,000
3,680	3,700	117,680	95,180	72,680	50,180	27,680	5,180	1,000	1,000	1,000	1,000
3,700	3,720	119,570	97,070	74,570	52,070	29,570	7,070	1,000	1,000	1,000	1,000
3,720	3,740	121,470	98,970	76,470	53,970	31,470	8,970	1,000	1,000	1,000	1,000
3,740	3,760	123,370	100,870	78,370	55,870	33,370	10,870	1,000	1,000	1,000	1,000
3,760	3,780	125,270	102,770	80,270	57,770	35,270	12,770	1,000	1,000	1,000	1,000
3,780	3,800	127,170	104,670	82,170	59,670	37,170	14,670	1,000	1,000	1,000	1,000
3,800	3,820	129,060	106,560	84,060	61,560	39,060	16,560	1,000	1,000	1,000	1,000
3,820	3,840	130,960	108,460	85,960	63,460	40,960	18,460	1,000	1,000	1,000	1,000
3,840	3,860	132,860	110,360	87,860	65,360	42,860	20,360	1,000	1,000	1,000	1,000
3,860	3,880	134,760	112,260	89,760	67,260	44,760	22,260	1,000	1,000	1,000	1,000
3,880	3,900	136,660	114,160	91,660	69,160	46,660	24,160	1,660	1,000	1,000	1,000
3,900	3,920	138,550	116,050	93,550	71,050	48,550	26,050	3,550	1,000	1,000	1,000
3,920	3,940	140,450	117,950	95,450	72,950	50,450	27,950	5,450	1,000	1,000	1,000
3,940	3,960	142,350	119,850	97,350	74,850	52,350	29,850	7,350	1,000	1,000	1,000
3,960	3,980	144,250	121,750	99,250	76,750	54,250	31,750	9,250	1,000	1,000	1,000
3,980	4,000	146,150	123,650	101,150	78,650	56,150	33,650	11,150	1,000	1,000	1,00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4,000	4,020	148,040	125,540	103,040	80,540	58,040	35,540	13,040	1,000	1,000	1,000
4,020	4,040	149,940	127,440	104,940	82,440	59,940	37,440	14,940	1,000	1,000	1,000
4,040	4,060	151,840	129,340	106,840	84,340	61,840	39,340	16,840	1,000	1,000	1,000
4,060	4,080	153,740	131,240	108,740	86,240	63,740	41,240	18,740	1,000	1,000	1,000
4,080	4,100	155,640	133,140	110,640	88,140	65,640	43,140	20,640	1,000	1,000	1,000
4,100	4,120	157,530	135,030	112,530	90,030	67,530	45,030	22,530	1,000	1,000	1,000
4,120	4,140	159,430	136,930	114,430	91,930	69,430	46,930	24,430	1,930	1,000	1,000
4,140	4,160	161,330	138,830	116,330	93,830	71,330	48,830	26,330	3,830	1,000	1,000
4,160	4,180	163,230	140,730	118,230	95,730	73,230	50,730	28,230	5,730	1,000	1,000
4,180	4,200	165,130	142,630	120,130	97,630	75,130	52,630	30,130	7,630	1,000	1,000
4,200	4,220	167,020	144,520	122,020	99,520	77,020	54,520	32,020	9,520	1,000	1,000
4,220	4,240	168,920	146,420	123,920	101,420	78,920	56,420	33,920	11,420	1,000	1,000
4,240	4,260	170,820	148,320	125,820	103,320	80,820	58,320	35,820	13,320	1,000	1,000
4,260	4,280	172,720	150,220	127,720	105,220	82,720	60,220	37,720	15,220	1,000	1,000
4,280	4,300	174,620	152,120	129,620	107,120	84,620	62,120	39,620	17,120	1,000	1,000
4,300	4,320	176,510	154,010	131,510	109,010	86,510	64,010	41,510	19,010	1,000	1,000
4,320	4,340	178,410	155,910	133,410	110,910	88,410	65,910	43,410	20,910	1,000	1,000
4,340	4,360	180,360	157,860	135,360	112,860	90,360	67,860	45,360	22,860	1,000	1,000
4,360	4,380	182,420	159,920	137,420	114,920	92,420	69,920	47,420	24,920	2,420	1,000
4,380	4,400	184,480	161,980	139,480	116,980	94,480	71,980	49,480	26,980	4,480	1,000
4,400	4,420	186,540	164,040	141,540	119,040	96,540	74,040	51,540	29,040	6,540	1,000
4,420	4,440	188,600	166,100	143,600	121,100	98,600	76,100	53,600	31,100	8,600	1,000
4,440	4,460	190,660	168,160	145,660	123,160	100,660	78,160	55,660	33,160	10,660	1,000
4,460	4,480	192,720	170,220	147,720	125,220	102,720	80,220	57,720	35,220	12,720	1,000
4,480	4,500	194,780	172,280	149,780	127,280	104,780	82,280	59,780	37,280	14,780	1,000
4,500	4,520	196,840	174,340	151,840	129,340	106,840	84,340	61,840	39,340	16,840	1,000
4,520	4,540	198,900	176,400	153,900	131,400	108,900	86,400	63,900	41,400	18,900	1,000
4,540	4,560	200,960	178,460	155,960	133,460	110,960	88,460	65,960	43,460	20,960	1,000
4,560	4,580	203,020	180,520	158,020	135,520	113,020	90,520	68,020	45,520	23,020	1,000
4,580	4,600	205,080	182,580	160,080	137,580	115,080	92,580	70,080	47,580	25,080	2,580
4,600	4,620	207,140	184,640	162,140	139,640	117,140	94,640	72,140	49,640	27,140	4,640
4,620	4,640	209,200	186,700	164,200	141,700	119,200	96,700	74,200	51,700	29,200	6,700
4,640	4,660	211,260	188,760	166,260	143,760	121,260	98,760	76,260	53,760	31,260	8,760
4,660	4,680	213,320	190,820	168,320	145,820	123,320	100,820	78,320	55,820	33,320	10,820
4,680	4,700	215,380	192,880	170,380	147,880	125,380	102,880	80,380	57,880	35,380	12,880
4,700	4,720	217,440	194,940	172,440	149,940	127,440	104,940	82,440	59,940	37,440	14,940
4,720	4,740	219,500	197,000	174,500	152,000	129,500	107,000	84,500	62,000	39,500	17,000
4,740	4,760	221,560	199,060	176,560	154,060	131,560	109,060	86,560	64,060	41,560	19,06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4,760	4,780	223,620	201,120	178,620	156,120	133,620	111,120	88,620	66,120	43,620	21,120
4,780	4,800	225,680	203,180	180,680	158,180	135,680	113,180	90,680	68,180	45,680	23,180
4,800	4,820	227,740	205,240	182,740	160,240	137,740	115,240	92,740	70,240	47,740	25,240
4,820	4,840	229,800	207,300	184,800	162,300	139,800	117,300	94,800	72,300	49,800	27,300
4,840	4,860	231,860	209,360	186,860	164,360	141,860	119,360	96,860	74,360	51,860	29,360
4,860	4,880	233,920	211,420	188,920	166,420	143,920	121,420	98,920	76,420	53,920	31,420
4,880	4,900	235,980	213,480	190,980	168,480	145,980	123,480	100,980	78,480	55,980	33,480
4,900	4,920	238,040	215,540	193,040	170,540	148,040	125,540	103,040	80,540	58,040	35,540
4,920	4,940	240,100	217,600	195,100	172,600	150,100	127,600	105,100	82,600	60,100	37,600
4,940	4,960	242,160	219,660	197,160	174,660	152,160	129,660	107,160	84,660	62,160	39,660
4,960	4,980	244,220	221,720	199,220	176,720	154,220	131,720	109,220	86,720	64,220	41,720
4,980	5,000	246,280	223,780	201,280	178,780	156,280	133,780	111,280	88,780	66,280	43,780
5,000	5,020	248,520	226,020	203,520	181,020	158,520	136,020	113,520	91,020	68,520	46,020
5,020	5,040	250,940	228,440	205,940	183,440	160,940	138,440	115,940	93,440	70,940	48,440
5,040	5,060	253,360	230,860	208,360	185,860	163,360	140,860	118,360	95,860	73,360	50,860
5,060	5,080	255,780	233,280	210,780	188,280	165,780	143,280	120,780	98,280	75,780	53,280
5,080	5,100	258,200	235,700	213,200	190,700	168,200	145,700	123,200	100,700	78,200	55,700
5,100	5,120	260,620	238,120	215,620	193,120	170,620	148,120	125,620	103,120	80,620	58,120
5,120	5,140	263,040	240,540	218,040	195,540	173,040	150,540	128,040	105,540	83,040	60,540
5,140	5,160	265,460	242,960	220,460	197,960	175,460	152,960	130,460	107,960	85,460	62,960
5,160	5,180	267,880	245,380	222,880	200,380	177,880	155,380	132,880	110,380	87,880	65,380
5,180	5,200	270,300	247,800	225,300	202,800	180,300	157,800	135,300	112,800	90,300	67,800
5,200	5,220	272,720	250,220	227,720	205,220	182,720	160,220	137,720	115,220	92,720	70,220
5,220	5,240	275,140	252,640	230,140	207,640	185,140	162,640	140,140	117,640	95,140	72,640
5,240	5,260	277,560	255,060	232,560	210,060	187,560	165,060	142,560	120,060	97,560	75,060
5,260	5,280	279,980	257,480	234,980	212,480	189,980	167,480	144,980	122,480	99,980	77,480
5,280	5,300	282,400	259,900	237,400	214,900	192,400	169,900	147,400	124,900	102,400	79,900
5,300	5,320	284,820	262,320	239,820	217,320	194,820	172,320	149,820	127,320	104,820	82,320
5,320	5,340	287,240	264,740	242,240	219,740	197,240	174,740	152,240	129,740	107,240	84,740
5,340	5,360	289,660	267,160	244,660	222,160	199,660	177,160	154,660	132,160	109,660	87,160
5,360	5,380	292,080	269,580	247,080	224,580	202,080	179,580	157,080	134,580	112,080	89,580
5,380	5,400	294,500	272,000	249,500	227,000	204,500	182,000	159,500	137,000	114,500	92,000
5,400	5,420	296,920	274,420	251,920	229,420	206,920	184,420	161,920	139,420	116,920	94,420
5,420	5,440	299,340	276,840	254,340	231,840	209,340	186,840	164,340	141,840	119,340	96,840
5,440	5,460	301,760	279,260	256,760	234,260	211,760	189,260	166,760	144,260	121,760	99,260
5,460	5,480	304,180	281,680	259,180	236,680	214,180	191,680	169,180	146,680	124,180	101,680
5,480	5,500	306,600	284,100	261,600	239,100	216,600	194,100	171,600	149,100	126,600	104,100
5,500	5,520	309,020	286,520	264,020	241,520	219,020	196,520	174,020	151,520	129,020	106,52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520	5,540	311,440	288,940	266,440	243,940	221,440	198,940	176,440	153,940	131,440	108,940
5,540	5,560	313,860	291,360	268,860	246,360	223,860	201,360	178,860	156,360	133,860	111,360
5,560	5,580	316,280	293,780	271,280	248,780	226,280	203,780	181,280	158,780	136,280	113,780
5,580	5,600	318,700	296,200	273,700	251,200	228,700	206,200	183,700	161,200	138,700	116,200
5,600	5,620	321,120	298,620	276,120	253,620	231,120	208,620	186,120	163,620	141,120	118,620
5,620	5,640	323,540	301,040	278,540	256,040	233,540	211,040	188,540	166,040	143,540	121,040
5,640	5,660	325,960	303,460	280,960	258,460	235,960	213,460	190,960	168,460	145,960	123,460
5,660	5,680	328,380	305,880	283,380	260,880	238,380	215,880	193,380	170,880	148,380	125,880
5,680	5,700	330,800	308,300	285,800	263,300	240,800	218,300	195,800	173,300	150,800	128,300
5,700	5,720	333,220	310,720	288,220	265,720	243,220	220,720	198,220	175,720	153,220	130,720
5,720	5,740	335,640	313,140	290,640	268,140	245,640	223,140	200,640	178,140	155,640	133,140
5,740	5,760	338,060	315,560	293,060	270,560	248,060	225,560	203,060	180,560	158,060	135,560
5,760	5,780	340,480	317,980	295,480	272,980	250,480	227,980	205,480	182,980	160,480	137,980
5,780	5,800	342,900	320,400	297,900	275,400	252,900	230,400	207,900	185,400	162,900	140,400
5,800	5,820	345,320	322,820	300,320	277,820	255,320	232,820	210,320	187,820	165,320	142,820
5,820	5,840	347,740	325,240	302,740	280,240	257,740	235,240	212,740	190,240	167,740	145,240
5,840	5,860	350,540	328,040	305,540	283,040	260,540	238,040	215,540	193,040	170,540	148,040
5,860	5,880	353,420	330,920	308,420	285,920	263,420	240,920	218,420	195,920	173,420	150,920
5,880	5,900	356,300	333,800	311,300	288,800	266,300	243,800	221,300	198,800	176,300	153,800
5,900	5,920	359,180	336,680	314,180	291,680	269,180	246,680	224,180	201,680	179,180	156,680
5,920	5,940	362,060	339,560	317,060	294,560	272,060	249,560	227,060	204,560	182,060	159,560
5,940	5,960	364,940	342,440	319,940	297,440	274,940	252,440	229,940	207,440	184,940	162,440
5,960	5,980	367,820	345,320	322,820	300,320	277,820	255,320	232,820	210,320	187,820	165,320
5,980	6,000	370,700	348,200	325,700	303,200	280,700	258,200	235,700	213,200	190,700	168,200
6,000	6,020	373,580	351,080	328,580	306,080	283,580	261,080	238,580	216,080	193,580	171,080
6,020	6,040	376,460	353,960	331,460	308,960	286,460	263,960	241,460	218,960	196,460	173,960
6,040	6,060	379,340	356,840	334,340	311,840	289,340	266,840	244,340	221,840	199,340	176,840
6,060	6,080	382,220	359,720	337,220	314,720	292,220	269,720	247,220	224,720	202,220	179,720
6,080	6,100	385,100	362,600	340,100	317,600	295,100	272,600	250,100	227,600	205,100	182,600
6,100	6,120	387,980	365,480	342,980	320,480	297,980	275,480	252,980	230,480	207,980	185,480
6,120	6,140	390,860	368,360	345,860	323,360	300,860	278,360	255,860	233,360	210,860	188,360
6,140	6,160	393,740	371,240	348,740	326,240	303,740	281,240	258,740	236,240	213,740	191,240
6,160	6,180	396,620	374,120	351,620	329,120	306,620	284,120	261,620	239,120	216,620	194,120
6,180	6,200	399,500	377,000	354,500	332,000	309,500	287,000	264,500	242,000	219,500	197,000
6,200	6,220	402,380	379,880	357,380	334,880	312,380	289,880	267,380	244,880	222,380	199,880
6,220	6,240	405,260	382,760	360,260	337,760	315,260	292,760	270,260	247,760	225,260	202,760
6,240	6,260	408,140	385,640	363,140	340,640	318,140	295,640	273,140	250,640	228,140	205,640
6,260	6,280	411,020	388,520	366,020	343,520	321,020	298,520	276,020	253,520	231,020	208,52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280	6,300	413,900	391,400	368,900	346,400	323,900	301,400	278,900	256,400	233,900	211,400
6,300	6,320	416,780	394,280	371,780	349,280	326,780	304,280	281,780	259,280	236,780	214,280
6,320	6,340	419,660	397,160	374,660	352,160	329,660	307,160	284,660	262,160	239,660	217,160
6,340	6,360	422,540	400,040	377,540	355,040	332,540	310,040	287,540	265,040	242,540	220,040
6,360	6,380	425,420	402,920	380,420	357,920	335,420	312,920	290,420	267,920	245,420	222,920
6,380	6,400	428,300	405,800	383,300	360,800	338,300	315,800	293,300	270,800	248,300	225,800
6,400	6,420	431,180	408,680	386,180	363,680	341,180	318,680	296,180	273,680	251,180	228,680
6,420	6,440	434,060	411,560	389,060	366,560	344,060	321,560	299,060	276,560	254,060	231,560
6,440	6,460	436,940	414,440	391,940	369,440	346,940	324,440	301,940	279,440	256,940	234,440
6,460	6,480	439,820	417,320	394,820	372,320	349,820	327,320	304,820	282,320	259,820	237,320
6,480	6,500	442,700	420,200	397,700	375,200	352,700	330,200	307,700	285,200	262,700	240,200
6,500	6,520	445,580	423,080	400,580	378,080	355,580	333,080	310,580	288,080	265,580	243,080
6,520	6,540	448,460	425,960	403,460	380,960	358,460	335,960	313,460	290,960	268,460	245,960
6,540	6,560	451,340	428,840	406,340	383,840	361,340	338,840	316,340	293,840	271,340	248,840
6,560	6,580	454,220	431,720	409,220	386,720	364,220	341,720	319,220	296,720	274,220	251,720
6,580	6,600	457,100	434,600	412,100	389,600	367,100	344,600	322,100	299,600	277,100	254,600
6,600	6,620	459,980	437,480	414,980	392,480	369,980	347,480	324,980	302,480	279,980	257,480
6,620	6,640	462,860	440,360	417,860	395,360	372,860	350,360	327,860	305,360	282,860	260,360
6,640	6,660	465,740	443,240	420,740	398,240	375,740	353,240	330,740	308,240	285,740	263,240
6,660	6,680	468,620	446,120	423,620	401,120	378,620	356,120	333,620	311,120	288,620	266,120
6,680	6,700	471,500	449,000	426,500	404,000	381,500	359,000	336,500	314,000	291,500	269,000
6,700	6,720	474,380	451,880	429,380	406,880	384,380	361,880	339,380	316,880	294,380	271,880
6,720	6,740	477,260	454,760	432,260	409,760	387,260	364,760	342,260	319,760	297,260	274,760
6,740	6,760	480,140	457,640	435,140	412,640	390,140	367,640	345,140	322,640	300,140	277,640
6,760	6,780	483,020	460,520	438,020	415,520	393,020	370,520	348,020	325,520	303,020	280,520
6,780	6,800	485,900	463,400	440,900	418,400	395,900	373,400	350,900	328,400	305,900	283,400
6,800	6,820	488,780	466,280	443,780	421,280	398,780	376,280	353,780	331,280	308,780	286,280
6,820	6,840	491,660	469,160	446,660	424,160	401,660	379,160	356,660	334,160	311,660	289,160
6,840	6,860	494,540	472,040	449,540	427,040	404,540	382,040	359,540	337,040	314,540	292,040
6,860	6,880	497,420	474,920	452,420	429,920	407,420	384,920	362,420	339,920	317,420	294,920
6,880	6,900	500,300	477,800	455,300	432,800	410,300	387,800	365,300	342,800	320,300	297,800
6,900	6,920	503,180	480,680	458,180	435,680	413,180	390,680	368,180	345,680	323,180	300,680
6,920	6,940	506,060	483,560	461,060	438,560	416,060	393,560	371,060	348,560	326,060	303,560
6,940	6,960	508,940	486,440	463,940	441,440	418,940	396,440	373,940	351,440	328,940	306,440
6,960	6,980	511,820	489,320	466,820	444,320	421,820	399,320	376,820	354,320	331,820	309,320
6,980	7,000	514,700	492,200	469,700	447,200	424,700	402,200	379,700	357,200	334,700	312,200
7,000	7,020	517,580	495,080	472,580	450,080	427,580	405,080	382,580	360,080	337,580	315,080
7,020	7,040	520,460	497,960	475,460	452,960	430,460	407,960	385,460	362,960	340,460	317,96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7,040	7,060	523,340	500,840	478,340	455,840	433,340	410,840	388,340	365,840	343,340	320,840
7,060	7,080	526,220	503,720	481,220	458,720	436,220	413,720	391,220	368,720	346,220	323,720
7,080	7,100	529,100	506,600	484,100	461,600	439,100	416,600	394,100	371,600	349,100	326,600
7,100	7,120	531,980	509,480	486,980	464,480	441,980	419,480	396,980	374,480	351,980	329,480
7,120	7,140	534,860	512,360	489,860	467,360	444,860	422,360	399,860	377,360	354,860	332,360
7,140	7,160	537,740	515,240	492,740	470,240	447,740	425,240	402,740	380,240	357,740	335,240
7,160	7,180	540,620	518,120	495,620	473,120	450,620	428,120	405,620	383,120	360,620	338,120
7,180	7,200	543,800	521,000	498,500	476,000	453,500	431,000	408,500	386,000	363,500	341,000
7,200	7,220	547,000	523,880	501,380	478,880	456,380	433,880	411,380	388,880	366,380	343,880
7,220	7,240	550,200	526,760	504,260	481,760	459,260	436,760	414,260	391,760	369,260	346,760
7,240	7,260	553,400	529,640	507,140	484,640	462,140	439,640	417,140	394,640	372,140	349,640
7,260	7,280	556,600	532,520	510,020	487,520	465,020	442,520	420,020	397,520	375,020	352,520
7,280	7,300	559,800	535,400	512,900	490,400	467,900	445,400	422,900	400,400	377,900	355,400
7,300	7,320	563,000	538,280	515,780	493,280	470,780	448,280	425,780	403,280	380,780	358,280
7,320	7,340	566,200	541,200	518,660	496,160	473,660	451,160	428,660	406,160	383,660	361,160
7,340	7,360	569,400	544,400	521,540	499,040	476,540	454,040	431,540	409,040	386,540	364,040
7,360	7,380	572,600	547,600	524,420	501,920	479,420	456,920	434,420	411,920	389,420	366,920
7,380	7,400	575,800	550,800	527,300	504,800	482,300	459,800	437,300	414,800	392,300	369,800
7,400	7,420	579,000	554,000	530,180	507,680	485,180	462,680	440,180	417,680	395,180	372,680
7,420	7,440	582,200	557,200	533,060	510,560	488,060	465,560	443,060	420,560	398,060	375,560
7,440	7,460	585,400	560,400	535,940	513,440	490,940	468,440	445,940	423,440	400,940	378,440
7,460	7,480	588,600	563,600	538,820	516,320	493,820	471,320	448,820	426,320	403,820	381,320
7,480	7,500	591,800	566,800	541,800	519,200	496,700	474,200	451,700	429,200	406,700	384,200
7,500	7,520	595,000	570,000	545,000	522,080	499,580	477,080	454,580	432,080	409,580	387,080
7,520	7,540	598,200	573,200	548,200	524,960	502,460	479,960	457,460	434,960	412,460	389,960
7,540	7,560	601,400	576,400	551,400	527,840	505,340	482,840	460,340	437,840	415,340	392,840
7,560	7,580	604,600	579,600	554,600	530,720	508,220	485,720	463,220	440,720	418,220	395,720
7,580	7,600	607,800	582,800	557,800	533,600	511,100	488,600	466,100	443,600	421,100	398,600
7,600	7,620	611,000	586,000	561,000	536,480	513,980	491,480	468,980	446,480	423,980	401,480
7,620	7,640	614,200	589,200	564,200	539,360	516,860	494,360	471,860	449,360	426,860	404,360
7,640	7,660	617,400	592,400	567,400	542,400	519,740	497,240	474,740	452,240	429,740	407,240
7,660	7,680	620,600	595,600	570,600	545,600	522,620	500,120	477,620	455,120	432,620	410,120
7,680	7,700	623,800	598,800	573,800	548,800	525,500	503,000	480,500	458,000	435,500	413,000
7,700	7,720	627,000	602,000	577,000	552,000	528,380	505,880	483,380	460,880	438,380	415,880
7,720	7,740	630,200	605,200	580,200	555,200	531,260	508,760	486,260	463,760	441,260	418,760
7,740	7,760	633,400	608,400	583,400	558,400	534,140	511,640	489,140	466,640	444,140	421,640
7,760	7,780	636,600	611,600	586,600	561,600	537,020	514,520	492,020	469,520	447,020	424,520
7,780	7,800	639,800	614,800	589,800	564,800	539,900	517,400	494,900	472,400	449,900	427,40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7,800	7,820	643,000	618,000	593,000	568,000	543,000	520,280	497,780	475,280	452,780	430,280
7,820	7,840	646,200	621,200	596,200	571,200	546,200	523,160	500,660	478,160	455,660	433,160
7,840	7,860	649,400	624,400	599,400	574,400	549,400	526,040	503,540	481,040	458,540	436,040
7,860	7,880	652,600	627,600	602,600	577,600	552,600	528,920	506,420	483,920	461,420	438,920
7,880	7,900	655,800	630,800	605,800	580,800	555,800	531,800	509,300	486,800	464,300	441,800
7,900	7,920	659,000	634,000	609,000	584,000	559,000	534,680	512,180	489,680	467,180	444,680
7,920	7,940	662,200	637,200	612,200	587,200	562,200	537,560	515,060	492,560	470,060	447,560
7,940	7,960	665,400	640,400	615,400	590,400	565,400	540,440	517,940	495,440	472,940	450,440
7,960	7,980	668,600	643,600	618,600	593,600	568,600	543,600	520,820	498,320	475,820	453,320
7,980	8,000	671,800	646,800	621,800	596,800	571,800	546,800	523,700	501,200	478,700	456,200
8,000	8,020	675,000	650,000	625,000	600,000	575,000	550,000	526,580	504,080	481,580	459,080
8,020	8,040	678,200	653,200	628,200	603,200	578,200	553,200	529,460	506,960	484,460	461,960
8,040	8,060	681,400	656,400	631,400	606,400	581,400	556,400	532,340	509,840	487,340	464,840
8,060	8,080	684,600	659,600	634,600	609,600	584,600	559,600	535,220	512,720	490,220	467,720
8,080	8,100	687,800	662,800	637,800	612,800	587,800	562,800	538,100	515,600	493,100	470,600
8,100	8,120	691,000	666,000	641,000	616,000	591,000	566,000	541,000	518,480	495,980	473,480
8,120	8,140	694,200	669,200	644,200	619,200	594,200	569,200	544,200	521,360	498,860	476,360
8,140	8,160	697,400	672,400	647,400	622,400	597,400	572,400	547,400	524,240	501,740	479,240
8,160	8,180	700,600	675,600	650,600	625,600	600,600	575,600	550,600	527,120	504,620	482,120
8,180	8,200	703,800	678,800	653,800	628,800	603,800	578,800	553,800	530,000	507,500	485,000
8,200	8,220	707,000	682,000	657,000	632,000	607,000	582,000	557,000	532,880	510,380	487,880
8,220	8,240	710,200	685,200	660,200	635,200	610,200	585,200	560,200	535,760	513,260	490,760
8,240	8,260	713,400	688,400	663,400	638,400	613,400	588,400	563,400	538,640	516,140	493,640
8,260	8,280	716,600	691,600	666,600	641,600	616,600	591,600	566,600	541,600	519,020	496,520
8,280	8,300	719,800	694,800	669,800	644,800	619,800	594,800	569,800	544,800	521,900	499,400
8,300	8,320	723,000	698,000	673,000	648,000	623,000	598,000	573,000	548,000	524,780	502,280
8,320	8,340	726,200	701,200	676,200	651,200	626,200	601,200	576,200	551,200	527,660	505,160
8,340	8,360	729,400	704,400	679,400	654,400	629,400	604,400	579,400	554,400	530,540	508,040
8,360	8,380	732,600	707,600	682,600	657,600	632,600	607,600	582,600	557,600	533,420	510,920
8,380	8,400	735,800	710,800	685,800	660,800	635,800	610,800	585,800	560,800	536,300	513,800
8,400	8,420	739,000	714,000	689,000	664,000	639,000	614,000	589,000	564,000	539,180	516,680
8,420	8,440	742,200	717,200	692,200	667,200	642,200	617,200	592,200	567,200	542,200	519,560
8,440	8,460	745,400	720,400	695,400	670,400	645,400	620,400	595,400	570,400	545,400	522,440
8,460	8,480	748,600	723,600	698,600	673,600	648,600	623,600	598,600	573,600	548,600	525,320
8,480	8,500	751,800	726,800	701,800	676,800	651,800	626,800	601,800	576,800	551,800	528,200
8,500	8,520	755,000	730,000	705,000	680,000	655,000	630,000	605,000	580,000	555,000	531,080
8,520	8,540	758,200	733,200	708,200	683,200	658,200	633,200	608,200	583,200	558,200	533,960
8,540	8,560	761,400	736,400	711,400	686,400	661,400	636,400	611,400	586,400	561,400	536,84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8,560	8,580	764,600	739,600	714,600	689,600	664,600	639,600	614,600	589,600	564,600	539,720
8,580	8,600	767,800	742,800	717,800	692,800	667,800	642,800	617,800	592,800	567,800	542,800
8,600	8,620	771,000	746,000	721,000	696,000	671,000	646,000	621,000	596,000	571,000	546,000
8,620	8,640	774,200	749,200	724,200	699,200	674,200	649,200	624,200	599,200	574,200	549,200
8,640	8,660	777,400	752,400	727,400	702,400	677,400	652,400	627,400	602,400	577,400	552,400
8,660	8,680	780,600	755,600	730,600	705,600	680,600	655,600	630,600	605,600	580,600	555,600
8,680	8,700	783,800	758,800	733,800	708,800	683,800	658,800	633,800	608,800	583,800	558,800
8,700	8,720	787,000	762,000	737,000	712,000	687,000	662,000	637,000	612,000	587,000	562,000
8,720	8,740	790,200	765,200	740,200	715,200	690,200	665,200	640,200	615,200	590,200	565,200
8,740	8,760	793,400	768,400	743,400	718,400	693,400	668,400	643,400	618,400	593,400	568,400
8,760	8,780	796,600	771,600	746,600	721,600	696,600	671,600	646,600	621,600	596,600	571,600
8,780	8,800	799,800	774,800	749,800	724,800	699,800	674,800	649,800	624,800	599,800	574,800
8,800	8,820	803,000	778,000	753,000	728,000	703,000	678,000	653,000	628,000	603,000	578,000
8,820	8,840	806,200	781,200	756,200	731,200	706,200	681,200	656,200	631,200	606,200	581,200
8,840	8,860	809,400	784,400	759,400	734,400	709,400	684,400	659,400	634,400	609,400	584,400
8,860	8,880	812,600	787,600	762,600	737,600	712,600	687,600	662,600	637,600	612,600	587,600
8,880	8,900	815,800	790,800	765,800	740,800	715,800	690,800	665,800	640,800	615,800	590,800
8,900	8,920	819,000	794,000	769,000	744,000	719,000	694,000	669,000	644,000	619,000	594,000
8,920	8,940	822,200	797,200	772,200	747,200	722,200	697,200	672,200	647,200	622,200	597,200
8,940	8,960	825,400	800,400	775,400	750,400	725,400	700,400	675,400	650,400	625,400	600,400
8,960	8,980	828,600	803,600	778,600	753,600	728,600	703,600	678,600	653,600	628,600	603,600
8,980	9,000	831,800	806,800	781,800	756,800	731,800	706,800	681,800	656,800	631,800	606,800
9,000	9,020	835,000	810,000	785,000	760,000	735,000	710,000	685,000	660,000	635,000	610,000
9,020	9,040	838,200	813,200	788,200	763,200	738,200	713,200	688,200	663,200	638,200	613,200
9,040	9,060	841,400	816,400	791,400	766,400	741,400	716,400	691,400	666,400	641,400	616,400
9,060	9,080	844,600	819,600	794,600	769,600	744,600	719,600	694,600	669,600	644,600	619,600
9,080	9,100	847,800	822,800	797,800	772,800	747,800	722,800	697,800	672,800	647,800	622,800
9,100	9,120	851,000	826,000	801,000	776,000	751,000	726,000	701,000	676,000	651,000	626,000
9,120	9,140	854,200	829,200	804,200	779,200	754,200	729,200	704,200	679,200	654,200	629,200
9,140	9,160	857,400	832,400	807,400	782,400	757,400	732,400	707,400	682,400	657,400	632,400
9,160	9,180	860,600	835,600	810,600	785,600	760,600	735,600	710,600	685,600	660,600	635,600
9,180	9,200	863,800	838,800	813,800	788,800	763,800	738,800	713,800	688,800	663,800	638,800
9,200	9,220	867,000	842,000	817,000	792,000	767,000	742,000	717,000	692,000	667,000	642,000
9,220	9,240	870,200	845,200	820,200	795,200	770,200	745,200	720,200	695,200	670,200	645,200
9,240	9,260	873,400	848,400	823,400	798,400	773,400	748,400	723,400	698,400	673,400	648,400
9,260	9,280	876,600	851,600	826,600	801,600	776,600	751,600	726,600	701,600	676,600	651,600
9,280	9,300	879,800	854,800	829,800	804,800	779,800	754,800	729,800	704,800	679,800	654,800
9,300	9,320	883,000	858,000	833,000	808,000	783,000	758,000	733,000	708,000	683,000	658,00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9,320	9,340	886,200	861,200	836,200	811,200	786,200	761,200	736,200	711,200	686,200	661,200
9,340	9,360	889,400	864,400	839,400	814,400	789,400	764,400	739,400	714,400	689,400	664,400
9,360	9,380	892,600	867,600	842,600	817,600	792,600	767,600	742,600	717,600	692,600	667,600
9,380	9,400	895,800	870,800	845,800	820,800	795,800	770,800	745,800	720,800	695,800	670,800
9,400	9,420	899,000	874,000	849,000	824,000	799,000	774,000	749,000	724,000	699,000	674,000
9,420	9,440	902,200	877,200	852,200	827,200	802,200	777,200	752,200	727,200	702,200	677,200
9,440	9,460	905,400	880,400	855,400	830,400	805,400	780,400	755,400	730,400	705,400	680,400
9,460	9,480	908,600	883,600	858,600	833,600	808,600	783,600	758,600	733,600	708,600	683,600
9,480	9,500	911,800	886,800	861,800	836,800	811,800	786,800	761,800	736,800	711,800	686,800
9,500	9,520	915,000	890,000	865,000	840,000	815,000	790,000	765,000	740,000	715,000	690,000
9,520	9,540	918,200	893,200	868,200	843,200	818,200	793,200	768,200	743,200	718,200	693,200
9,540	9,560	921,400	896,400	871,400	846,400	821,400	796,400	771,400	746,400	721,400	696,400
9,560	9,580	924,600	899,600	874,600	849,600	824,600	799,600	774,600	749,600	724,600	699,600
9,580	9,600	927,800	902,800	877,800	852,800	827,800	802,800	777,800	752,800	727,800	702,800
9,600	9,620	931,000	906,000	881,000	856,000	831,000	806,000	781,000	756,000	731,000	706,000
9,620	9,640	934,200	909,200	884,200	859,200	834,200	809,200	784,200	759,200	734,200	709,200
9,640	9,660	937,400	912,400	887,400	862,400	837,400	812,400	787,400	762,400	737,400	712,400
9,660	9,680	940,600	915,600	890,600	865,600	840,600	815,600	790,600	765,600	740,600	715,600
9,680	9,700	943,800	918,800	893,800	868,800	843,800	818,800	793,800	768,800	743,800	718,800
9,700	9,720	947,000	922,000	897,000	872,000	847,000	822,000	797,000	772,000	747,000	722,000
9,720	9,740	950,200	925,200	900,200	875,200	850,200	825,200	800,200	775,200	750,200	725,200
9,740	9,760	953,400	928,400	903,400	878,400	853,400	828,400	803,400	778,400	753,400	728,400
9,760	9,780	956,600	931,600	906,600	881,600	856,600	831,600	806,600	781,600	756,600	731,600
9,780	9,800	959,800	934,800	909,800	884,800	859,800	834,800	809,800	784,800	759,800	734,800
9,800	9,820	963,000	938,000	913,000	888,000	863,000	838,000	813,000	788,000	763,000	738,000
9,820	9,840	966,200	941,200	916,200	891,200	866,200	841,200	816,200	791,200	766,200	741,200
9,840	9,860	969,400	944,400	919,400	894,400	869,400	844,400	819,400	794,400	769,400	744,400
9,860	9,880	972,600	947,600	922,600	897,600	872,600	847,600	822,600	797,600	772,600	747,600
9,880	9,900	975,800	950,800	925,800	900,800	875,800	850,800	825,800	800,800	775,800	750,800
9,900	9,920	979,000	954,000	929,000	904,000	879,000	854,000	829,000	804,000	779,000	754,000
9,920	9,940	982,200	957,200	932,200	907,200	882,200	857,200	832,200	807,200	782,200	757,200
9,940	9,960	985,400	960,400	935,400	910,400	885,400	860,400	835,400	810,400	785,400	760,400
9,960	9,980	988,600	963,600	938,600	913,600	888,600	863,600	838,600	813,600	788,600	763,600
9,980	10,000	991,800	966,800	941,800	916,800	891,800	866,800	841,800	816,800	791,800	766,800
10,000	10,020	995,000	970,000	945,000	920,000	895,000	870,000	845,000	820,000	795,000	770,000
10,020	10,040	998,200	973,200	948,200	923,200	898,200	873,200	848,200	823,200	798,200	773,200
10,040	10,060	1,001,400	976,400	951,400	926,400	901,400	876,400	851,400	826,400	801,400	776,400
10,060	10,080	1,004,600	979,600	954,600	929,600	904,600	879,600	854,600	829,600	804,600	779,60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0,080	10,100	1,007,800	982,800	957,800	932,800	907,800	882,800	857,800	832,800	807,800	782,800
10,100	10,120	1,011,000	986,000	961,000	936,000	911,000	886,000	861,000	836,000	811,000	786,000
10,120	10,140	1,014,200	989,200	964,200	939,200	914,200	889,200	864,200	839,200	814,200	789,200
10,140	10,160	1,017,400	992,400	967,400	942,400	917,400	892,400	867,400	842,400	817,400	792,400
10,160	10,180	1,020,600	995,600	970,600	945,600	920,600	895,600	870,600	845,600	820,600	795,600
10,180	10,200	1,023,800	998,800	973,800	948,800	923,800	898,800	873,800	848,800	823,800	798,800
10,200	10,220	1,027,000	1,002,000	977,000	952,000	927,000	902,000	877,000	852,000	827,000	802,000
10,220	10,240	1,030,200	1,005,200	980,200	955,200	930,200	905,200	880,200	855,200	830,200	805,200
10,240	10,260	1,033,400	1,008,400	983,400	958,400	933,400	908,400	883,400	858,400	833,400	808,400
10,260	10,280	1,036,600	1,011,600	986,600	961,600	936,600	911,600	886,600	861,600	836,600	811,600
10,280	10,300	1,039,800	1,014,800	989,800	964,800	939,800	914,800	889,800	864,800	839,800	814,800
10,300	10,320	1,043,000	1,018,000	993,000	968,000	943,000	918,000	893,000	868,000	843,000	818,000
10,320	10,340	1,046,200	1,021,200	996,200	971,200	946,200	921,200	896,200	871,200	846,200	821,200
10,340	10,360	1,049,400	1,024,400	999,400	974,400	949,400	924,400	899,400	874,400	849,400	824,400
10,360	10,380	1,052,600	1,027,600	1,002,600	977,600	952,600	927,600	902,600	877,600	852,600	827,600
10,380	10,400	1,055,800	1,030,800	1,005,800	980,800	955,800	930,800	905,800	880,800	855,800	830,800
10,400	10,420	1,059,000	1,034,000	1,009,000	984,000	959,000	934,000	909,000	884,000	859,000	834,000
10,420	10,440	1,062,200	1,037,200	1,012,200	987,200	962,200	937,200	912,200	887,200	862,200	837,200
10,440	10,460	1,065,400	1,040,400	1,015,400	990,400	965,400	940,400	915,400	890,400	865,400	840,400
10,460	10,480	1,068,600	1,043,600	1,018,600	993,600	968,600	943,600	918,600	893,600	868,600	843,600
10,480	10,500	1,071,800	1,046,800	1,021,800	996,800	971,800	946,800	921,800	896,800	871,800	846,800
10,500	10,520	1,075,000	1,050,000	1,025,000	1,000,000	975,000	950,000	925,000	900,000	875,000	850,000
10,520	10,540	1,078,200	1,053,200	1,028,200	1,003,200	978,200	953,200	928,200	903,200	878,200	853,200
10,540	10,560	1,081,400	1,056,400	1,031,400	1,006,400	981,400	956,400	931,400	906,400	881,400	856,400
10,560	10,580	1,084,600	1,059,600	1,034,600	1,009,600	984,600	959,600	934,600	909,600	884,600	859,600
10,580	10,600	1,087,800	1,062,800	1,037,800	1,012,800	987,800	962,800	937,800	912,800	887,800	862,800
10,600	10,620	1,091,000	1,066,000	1,041,000	1,016,000	991,000	966,000	941,000	916,000	891,000	866,000
10,620	10,640	1,094,200	1,069,200	1,044,200	1,019,200	994,200	969,200	944,200	919,200	894,200	869,200
10,640	10,660	1,097,400	1,072,400	1,047,400	1,022,400	997,400	972,400	947,400	922,400	897,400	872,400
10,660	10,680	1,100,600	1,075,600	1,050,600	1,025,600	1,000,600	975,600	950,600	925,600	900,600	875,600
10,680	10,700	1,103,800	1,078,800	1,053,800	1,028,800	1,003,800	978,800	953,800	928,800	903,800	878,800
10,700	10,720	1,107,000	1,082,000	1,057,000	1,032,000	1,007,000	982,000	957,000	932,000	907,000	882,000
10,720	10,740	1,110,200	1,085,200	1,060,200	1,035,200	1,010,200	985,200	960,200	935,200	910,200	885,200
10,740	10,760	1,113,400	1,088,400	1,063,400	1,038,400	1,013,400	988,400	963,400	938,400	913,400	888,400
10,760	10,780	1,116,600	1,091,600	1,066,600	1,041,600	1,016,600	991,600	966,600	941,600	916,600	891,600
10,780	10,800	1,119,800	1,094,800	1,069,800	1,044,800	1,019,800	994,800	969,800	944,800	919,800	894,800
10,800	10,820	1,123,000	1,098,000	1,073,000	1,048,000	1,023,000	998,000	973,000	948,000	923,000	898,000
10,820	10,840	1,126,200	1,101,200	1,076,200	1,051,200	1,026,200	1,001,200	976,200	951,200	926,200	901,20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0,840	10,860	1,129,400	1,104,400	1,079,400	1,054,400	1,029,400	1,004,400	979,400	954,400	929,400	904,400
10,860	10,880	1,132,600	1,107,600	1,082,600	1,057,600	1,032,600	1,007,600	982,600	957,600	932,600	907,600
10,880	10,900	1,135,800	1,110,800	1,085,800	1,060,800	1,035,800	1,010,800	985,800	960,800	935,800	910,800
10,900	10,920	1,139,000	1,114,000	1,089,000	1,064,000	1,039,000	1,014,000	989,000	964,000	939,000	914,000
10,920	10,940	1,142,200	1,117,200	1,092,200	1,067,200	1,042,200	1,017,200	992,200	967,200	942,200	917,200
10,940	10,960	1,145,400	1,120,400	1,095,400	1,070,400	1,045,400	1,020,400	995,400	970,400	945,400	920,400
10,960	10,980	1,148,600	1,123,600	1,098,600	1,073,600	1,048,600	1,023,600	998,600	973,600	948,600	923,600
10,980	11,000	1,151,800	1,126,800	1,101,800	1,076,800	1,051,800	1,026,800	1,001,800	976,800	951,800	926,800
11,000	11,020	1,155,000	1,130,000	1,105,000	1,080,000	1,055,000	1,030,000	1,005,000	980,000	955,000	930,000
11,020	11,040	1,158,200	1,133,200	1,108,200	1,083,200	1,058,200	1,033,200	1,008,200	983,200	958,200	933,200
11,040	11,060	1,161,400	1,136,400	1,111,400	1,086,400	1,061,400	1,036,400	1,011,400	986,400	961,400	936,400
11,060	11,080	1,164,600	1,139,600	1,114,600	1,089,600	1,064,600	1,039,600	1,014,600	989,600	964,600	939,600
11,080	11,100	1,167,800	1,142,800	1,117,800	1,092,800	1,067,800	1,042,800	1,017,800	992,800	967,800	942,800
11,100	11,120	1,171,000	1,146,000	1,121,000	1,096,000	1,071,000	1,046,000	1,021,000	996,000	971,000	946,000
11,120	11,140	1,174,200	1,149,200	1,124,200	1,099,200	1,074,200	1,049,200	1,024,200	999,200	974,200	949,200
11,140	11,160	1,177,400	1,152,400	1,127,400	1,102,400	1,077,400	1,052,400	1,027,400	1,002,400	977,400	952,400
11,160	11,180	1,180,600	1,155,600	1,130,600	1,105,600	1,080,600	1,055,600	1,030,600	1,005,600	980,600	955,600
11,180	11,200	1,183,800	1,158,800	1,133,800	1,108,800	1,083,800	1,058,800	1,033,800	1,008,800	983,800	958,800
11,200	11,220	1,187,000	1,162,000	1,137,000	1,112,000	1,087,000	1,062,000	1,037,000	1,012,000	987,000	962,000
11,220	11,240	1,190,200	1,165,200	1,140,200	1,115,200	1,090,200	1,065,200	1,040,200	1,015,200	990,200	965,200
11,240	11,260	1,193,400	1,168,400	1,143,400	1,118,400	1,093,400	1,068,400	1,043,400	1,018,400	993,400	968,400
11,260	11,280	1,196,600	1,171,600	1,146,600	1,121,600	1,096,600	1,071,600	1,046,600	1,021,600	996,600	971,600
11,280	11,300	1,199,800	1,174,800	1,149,800	1,124,800	1,099,800	1,074,800	1,049,800	1,024,800	999,800	974,800
11,300	11,320	1,203,000	1,178,000	1,153,000	1,128,000	1,103,000	1,078,000	1,053,000	1,028,000	1,003,000	978,000
11,320	11,340	1,206,200	1,181,200	1,156,200	1,131,200	1,106,200	1,081,200	1,056,200	1,031,200	1,006,200	981,200
11,340	11,360	1,209,400	1,184,400	1,159,400	1,134,400	1,109,400	1,084,400	1,059,400	1,034,400	1,009,400	984,400
11,360	11,380	1,212,600	1,187,600	1,162,600	1,137,600	1,112,600	1,087,600	1,062,600	1,037,600	1,012,600	987,600
11,380	11,400	1,215,800	1,190,800	1,165,800	1,140,800	1,115,800	1,090,800	1,065,800	1,040,800	1,015,800	990,800
11,400	11,420	1,219,000	1,194,000	1,169,000	1,144,000	1,119,000	1,094,000	1,069,000	1,044,000	1,019,000	994,000
11,420	11,440	1,222,200	1,197,200	1,172,200	1,147,200	1,122,200	1,097,200	1,072,200	1,047,200	1,022,200	997,200
11,440	11,460	1,225,400	1,200,400	1,175,400	1,150,400	1,125,400	1,100,400	1,075,400	1,050,400	1,025,400	1,000,400
11,460	11,480	1,228,600	1,203,600	1,178,600	1,153,600	1,128,600	1,103,600	1,078,600	1,053,600	1,028,600	1,003,600
11,480	11,500	1,231,800	1,206,800	1,181,800	1,156,800	1,131,800	1,106,800	1,081,800	1,056,800	1,031,800	1,006,800
11,500	11,520	1,235,000	1,210,000	1,185,000	1,160,000	1,135,000	1,110,000	1,085,000	1,060,000	1,035,000	1,010,000
11,520	11,540	1,238,200	1,213,200	1,188,200	1,163,200	1,138,200	1,113,200	1,088,200	1,063,200	1,038,200	1,013,200
11,540	11,560	1,241,400	1,216,400	1,191,400	1,166,400	1,141,400	1,116,400	1,091,400	1,066,400	1,041,400	1,016,400
11,560	11,580	1,244,600	1,219,600	1,194,600	1,169,600	1,144,600	1,119,600	1,094,600	1,069,600	1,044,600	1,019,600
11,580	11,600	1,247,800	1,222,800	1,197,800	1,172,800	1,147,800	1,122,800	1,097,800	1,072,800	1,047,800	1,022,800

월지급액 (천원)		부양가족 인원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미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600	11,620	1,251,000	1,226,000	1,201,000	1,176,000	1,151,000	1,126,000	1,101,000	1,076,000	1,051,000	1,026,000
11,620	11,640	1,254,200	1,229,200	1,204,200	1,179,200	1,154,200	1,129,200	1,104,200	1,079,200	1,054,200	1,029,200
11,640	11,660	1,257,400	1,232,400	1,207,400	1,182,400	1,157,400	1,132,400	1,107,400	1,082,400	1,057,400	1,032,400
11,660	11,680	1,260,600	1,235,600	1,210,600	1,185,600	1,160,600	1,135,600	1,110,600	1,085,600	1,060,600	1,035,600
11,680	11,700	1,263,800	1,238,800	1,213,800	1,188,800	1,163,800	1,138,800	1,113,800	1,088,800	1,063,800	1,038,800
11,700	11,720	1,267,000	1,242,000	1,217,000	1,192,000	1,167,000	1,142,000	1,117,000	1,092,000	1,067,000	1,042,000
11,720	11,740	1,270,200	1,245,200	1,220,200	1,195,200	1,170,200	1,145,200	1,120,200	1,095,200	1,070,200	1,045,200
11,740	11,760	1,273,400	1,248,400	1,223,400	1,198,400	1,173,400	1,148,400	1,123,400	1,098,400	1,073,400	1,048,400
11,760	11,780	1,276,600	1,251,600	1,226,600	1,201,600	1,176,600	1,151,600	1,126,600	1,101,600	1,076,600	1,051,600
11,780	11,800	1,279,800	1,254,800	1,229,800	1,204,800	1,179,800	1,154,800	1,129,800	1,104,800	1,079,800	1,054,800
11,800	11,820	1,283,000	1,258,000	1,233,000	1,208,000	1,183,000	1,158,000	1,133,000	1,108,000	1,083,000	1,058,000
11,820	11,840	1,286,200	1,261,200	1,236,200	1,211,200	1,186,200	1,161,200	1,136,200	1,111,200	1,086,200	1,061,200
11,840	11,860	1,289,400	1,264,400	1,239,400	1,214,400	1,189,400	1,164,400	1,139,400	1,114,400	1,089,400	1,064,400
11,860	11,880	1,292,600	1,267,600	1,242,600	1,217,600	1,192,600	1,167,600	1,142,600	1,117,600	1,092,600	1,067,600
11,880	11,900	1,295,800	1,270,800	1,245,800	1,220,800	1,195,800	1,170,800	1,145,800	1,120,800	1,095,800	1,070,800
11,900	11,920	1,299,000	1,274,000	1,249,000	1,224,000	1,199,000	1,174,000	1,149,000	1,124,000	1,099,000	1,074,000
11,920	11,940	1,302,200	1,277,200	1,252,200	1,227,200	1,202,200	1,177,200	1,152,200	1,127,200	1,102,200	1,077,200
11,940	11,960	1,305,400	1,280,400	1,255,400	1,230,400	1,205,400	1,180,400	1,155,400	1,130,400	1,105,400	1,080,400
11,960	11,980	1,308,600	1,283,600	1,258,600	1,233,600	1,208,600	1,183,600	1,158,600	1,133,600	1,108,600	1,083,600
11,980	12,000	1,311,800	1,286,800	1,261,800	1,236,800	1,211,800	1,186,800	1,161,800	1,136,800	1,111,800	1,086,800
12,000		1,315,000	1,290,000	1,265,000	1,240,000	1,215,000	1,190,000	1,165,000	1,140,000	1,115,000	1,090,000
12,000 초과		12,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2,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상당액									

이 책의 내용은 2017.12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발 행 일 자 : 2018년 1월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 필 · 편 집 : 원천세과장 이 응 봉
행정사무관 김 용 재
행정사무관 김 동 근
국세조사관 김 정 열
국세조사관 김 경 희
국세조사관 김 영 노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